

부 탁 의 말 씀

이 가계부는 각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구입한 품목과 수입을 조사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며, 아울러 임금수준의 결정등 경제 및 사회정책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여 주셔서 국가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입 요 령

1. 매월 초하루 부터 말일까지 택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들어온 현금(현물 포함)을 매일 매일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지출품목이 많아 한 페이지를 넘을 때는 다음 페이지를 사용하시고, 수입이나 지출이 전연 없을 때에는 날자를 쓰시고 “없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3. 만일 택의 주인이 밖에 나가서 쓴 돈이나 가구원에게 준 용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가를 품목별로 파악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4.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출을 세분하여 구체적인 품목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 선물, 교통비, 술, 생선, 잡비 등 → 선물용설탕, 시내버스료, 정종, 풍치, 전자오락실 비용 등
5.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품목이나 가내부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재료비, 비품비 등은 기입하지 마시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품목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6. ※ 표시한 곳은 경제기획원에서 기입하는 란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I. 가구에 관한 사항				III. 주거에 관한 사항					
성	별	1. 남	2. 여	1. 차	가	월세평가액	천원		
연	령	만		2. 무	상	월세평가액	천원		
산			※	3. 관공사택	월세평가액	천원	천원		
(근무처 또는 사업체명을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월세 (무상)				
직			※	세	집	전	세	매월 지공제	월세평가액
(무슨일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보	증		
				4. 전	세	천원			천원
교			※	5. 보	증	부	천원	천원	
육				6. 삭	월	세	천원	천원	
정				7. 월	세			천원	
도									
• _____ 학교			{ 졸업 중퇴 재학						
• 무학									
월 평균 소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II. 연령 및 성별 가구원수				IV. 기 타 사 항					
연	령	남	여	(가구원이 모두 직업이 없을 때의 생계유지 방법, 관혼상제 등으로 소득 또는 지출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등 기타 참고사항을 쓰시오)					
2 세 이하									
3 ~ 5 세									
6 ~ 13 세									
14 ~ 19 세									
20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 이상									

기 입 예 시

수 입 및 지 출

1 월 3 일

「부식」등과 같이 막연하게
기입하지 말고 개개의 품
목을 기입한다.

외상 또는 일부로 구입한
물건은 지출란의 월부 및
외상 구입란에 기입한다.
(다음달의 우유, 신문대등
은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날의 현금 지출란에 기입
한다.)

가령 쌀 1가마를 구입 하
는데 돈이 모자라 50,000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0,000원을 외상으로 달아
놓았을 때, 가계부에는 현
금과 외상을 각각 줄을 달
리하여 기입하고 수량은
그 첫란에만 기입한다.

※ 부 호 기입란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현금및현물)	지 출		수 량	단 위
			현 금	월부및외상구입		
	두 무		300		2	모
	배 추		840		2	포기
	소 세 지		600		300	g
	달 갈		1500		30	개
	김 (외 상)			4,000	100	장
	사 과		1,000		17	개
	방 범 비		2,000		1	원분
	미 역		1,200			
	닭 튀 김		3,500			
	경 증 (신 물)		4,100			
	일 반 미 쌀 (현금)		70,000		80	kg
	" (외상)			10,000		
	세 락 비 누		1,800		10	장
	병 원 비 (중환병환)		5,000			
	의 료 보 험 수 록	5,000				
	장 남 바 지 (신용카드)			32,000		
	은행예금찾음	30,000				
	※ 합 계	995	996	997		
999	※ 현 물 총 액					
058	※ 월 부 및 외 상 값					
수 입 ※ 010~058		지 출 ※ 100~958				
		금 일 현금 잔 고		78,500		

수입 및 지출란

1. 수입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떤 종류의 수입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기입한다.
2.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누가 무엇에 썼는가를 기입한다.
3. 가족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식료품, 일용품은 무엇을 얼마만큼 썼는가를 기입한다.
4. 식료품의 경우, 한사발, 한몫 등으로 기입하지 말고 「미터」법에 의하여 「단위」란을 기입한다.

1월 25일 수입 및 지출

※ 부 호 기입란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입		지출		수량	단위
		(현금 및 현물)	현	금	월부및외상구입		
	가구주 봉급	298.000					
	" 조립수당	35.000					
	" 기여금			15.986			
	" 소득세			6.572			
	" 주민세			4.92			
	" 방위세			6.57			
	근로자 재경저축			10.000			
	보험불입(소득보험)			5.70			
	" (의료보험)			6.520			
	구내식당(백반)			12.500			
	전기료(정공분제외)			2.500		1	월분
	양복 월부금지불			17.500		1	회
	실당(직장에서현물로)	3.250					
	장남 버스표			4.000		1	개월
	다방에서 커피			600		2	잔
	무우(자가생산)	350					
	※ 합 계	995	996	997			
999	※ 현 물 총 액						
058	※ 월 부 및 외 상 값						

가구주가 직장에서 받는 봉급 또는 임금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수입」란에 기입하고 그 총액에서 뺀 소득세나 공과금을 유별로 세분하여 각각 지출란에 기입한다. 또한 직장에 속해있는 구내식당에서 매일 매일 매식을 하고 봉급에서 공제할 경우도 그 공제금을 「지출」의 「현금」란에 기입한다.

(기타 가구원이 받는 봉급 및 임금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전기료, 신문대, 수도료, 방세 등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은 기입누락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점포를 경영하는 가구가 팔 물건중 그 일부를 팔지 않고 자가소비 하였을 경우 현물 수입으로 보아 「수입」란에 기입한다. (자가 생산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수입 ※ 010~058	지출 ※ 100~958
금 일 현금 잔 고	317,403

※ 은행 구좌로 자동입출되는 품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0	전월에서 넘어온 현금

수 입 및 지 출

※ 부호 기입란	수입종류 및 지출품명	수 입	지 출	비 고
	연 금			
	정 기 예 금 이 자			
	전 기 료			
	수 도 료			
	전 화 요 금			
	TV 시 청 료			
	적 금 (상호부금포함)			
	()의 봉 급			
	()의 수 당			
	()의 기 여 금			
	()의 의료보험료			
	()의 주 민 세			
	()의 방 위 세			
	()의 소 득 세			

※ 상기 나열한 품목이외의 것이 있으면, 공란을 이용하십시오.
 단, 한번 자동입출되어 상기란에 기입된 품목은 가계부상(수입과 지출)에 다시 기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수 입 및 지 출

월 일

※ 부호 기입란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입 (현금및현물)	지출		수량	단위
			현금	월부및외상구입		
999	※ 합 계	995	996	997		
058	※ 월 부 및 외 상 값					
수 ※ 010 ~ 058			지 ※ 100 ~ 958	출		
			금 일 현 금 잔 고			

수 입 및 지 출

월 일

※ 부호 기입란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현금및현물)	지 출		수량	단위
			현 금	월부및외상구입		
999	※ 합 계	995	996	997		
058	※ 월 부 및 외 상 값					
수 ※ 010 ~ 058			지 ※ 100 ~ 958			
			금 일 현 금 잔 고			

수 입 및 지 출

월 일

※ 부호 기입란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입 (현금및현물)	지출		수량	단위
			현금	월부및외상구입		
999	※ 합 계	995	996	997		
999	※ 현 물 총 액					
058	※ 월 부 및 외 상 값					

수입 ※ 010 ~ 058

지출 ※ 100 ~ 958

금 일 현 금 잔 고

수 입 및 지 출

월 일

※ 부 호 기 입 란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현금및현물)	지 출		수 량	단 위
			현 금	월부및외상구입		
999	※ 합 계	995	996	997		
999	※ 현 물 총 액					
058	※ 월 부 및 외 상 값					
수 ※ 010 ~ 058			지 ※ 100 ~ 958			
			금 일 현금 잔 고			

수 입 및 지 출

월 일

※ 부호 기입란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현금및현물)	지 출		수량	단위
			현 금	월부및외상구입		
995	※ 합 계	996	997			
999	※ 현 물 총 액					
058	※ 월 부 및 외 상 값					
수 ※ 010 ~ 058			지 ※ 100 ~ 958			
			금 일 현 금 잔 고			

990	※월 말 현금 잔 고	
	※자 가 평 가 액	

※ 월 간 가 계 수 지 총 괄 표			
수 (010~058) 입		지 (100~958) 출	
전월에서 넘어온 현금 (090)		월 말 현금 잔 고 (990)	
현 물 총 액 (999)			
총 수 입		총 지 출	

주 요 품 목 소 비 및 재 고 량						
품 명	단 위	조사개시 전 재 고 량	월중구입량	월중소비량	월 말 재 고 량	
곡 류	쌀	kg	960	961	962	963
	보 리 쌀	kg	964	965	966	967
	밀 가 루	kg	968	969	970	971
연	연 탄	개	972	973	974	975
	석 유	ℓ	976	977	978	979
료	가 스	kg		980		
	도 시 가 스	kg			981	

비 고 (조사상의 문제점 및 특기사항을 기입하시오.)

도시가계조사

연간소득조사표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

100 연간근로소득					
○ 급여소득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 2px;">가家主 (111)</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가주원 (112)</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able>	가家主 (111)	□□□□ 만원	가주원 (112)	□□□□ 만원
가家主 (111)	□□□□ 만원				
가주원 (112)	□□□□ 만원				
○ 상 여 금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 2px;">가家主 (121)</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가주원 (122)</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able>	가家主 (121)	□□□□ 만원	가주원 (122)	□□□□ 만원
가家主 (121)	□□□□ 만원				
가주원 (122)	□□□□ 만원				
200 연간사업 및 부업소득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 2px;">가家主 (210)</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가주원 (220)</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able>	가家主 (210)	□□□□ 만원	가주원 (220)	□□□□ 만원
가家主 (210)	□□□□ 만원				
가주원 (220)	□□□□ 만원				
300 연간기타소득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padding: 2px;">이자·배당금·임대료(방세)(310) ...</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수증·보증금, 기타(320)</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만원</td> </tr> </table>	이자·배당금·임대료(방세)(310) ...	□□□□ 만원	수증·보증금, 기타(320)	□□□□ 만원
이자·배당금·임대료(방세)(310) ...	□□□□ 만원				
수증·보증금, 기타(320)	□□□□ 만원				

총계 (000) ... □□□□ 만원

100 연간근로소득

- 급여소득: 직장, 사업장에서 받은 봉급·임금과 시간외수당·위험수당·교통비·점심값·학비보조수당 등 각종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세금공제하기전의 금액(현물로 받은것도 포함)
- 상 여 금: 근무처로부터 받은 상여금(구정·추석·하기휴가 등 특별보너스 포함)

200 연간사업 및 부업소득

: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 얻은 소득이나 가내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총수입액중 각종 영업상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

300 연간기타소득

- 이자·배당금·임대료: 예금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주식배당금·방세 등
- 수증·보증금, 기타: 국가나 사회단체·다른 가구 또는 외지의 타가구원으로 부터 받았거나 그외의 경상적인 현금 및 현물수입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승인번호: 111-11-04

통계법제 8조(비밀의 보호)
 통계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
 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표

198 년 월

조사원 기록 사항	
통계사무소명	
조사요원성명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 자료처리요원기입란	
내검자성명	/
천공자성명	/
검공자성명	/
조사요원의견란	

관리 사항			
조사구번호			
구역및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권수	권중	권	
가구원 상황			
구분	남	여	계
총 가구원			
대상가구원			
제외자	15세미만		
	15세이상		
취업자			
실업자			
제외자중가구주유무	1. 있음, 2. 없음		
가구구분	1. 농가, 2. 비농가		

가구원번호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

① 가구원 이름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관계	⑥ 교 육 정 도
1. 일련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input type="text"/>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1. 남 자 2. 여 자	정확한 실체나이는 몇살입니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양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결혼하였습니까? 1. 미 혼 2. 유 배 우 3. 사 별 4. 이 혼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국민학교 이하 2. 중 학교 3. 고등학교 4. 초대 및 전문대 5. 대학이상 1. 출 업 2. 재 학 3. 중 퇴 4. 안다녔음

⑦ 활 동 상 태	⑨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⑩ 1 주 간의 구 직 여 부	⑪ 취 업 가 능 성 여 부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일하였음 <<(가-1)로 감>> 2. 일시휴직 3. 구직활동 4. 가 사 5. 통 학 6. 연소·연로 7. 불 구 8. 기타(이유:)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20. 없었음 ↳ 왜 지난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병 12. 연가 또는 휴가 13. 노동쟁의 14. 조업중단 15. 기 타 ()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자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못하였음 ↳ 일시적 병 ↳ 일기불순 ↳ 예비군훈련 소집 ↳ 가족의 관혼상제 ↳ 구직결과대기(30일 이내) 3. 구해보지 않았음 <<⑩로 감>>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나-1)로 감>> 2. 없었음 ⑫ 취 업 의 사 유 무 지금이라도 알맞는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다-1)로 감>> 2. 하지 않겠음(※ 질문끝)

가-1 취 업 시 간	가-2 평상시 취업시간	나-1 구 직 경 로	다-1 원하는 일의 형태
지난주 모든 일을 통털어 몇시간 일 했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8시간미만 무급가족 종사자 <<⑩으로 감>> 2. 1~35시간 <<(가-2)로 감>> 3. 36시간 이상 <<(라-1)로 감>> ※ 일시 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2. 1~35시간」에 ○표할 것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 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 왜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건강때문에 12. 가사, 통학으로 13.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14. 일거리가 없어서 15.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음 ↳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36시간 미만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직업소개소에 등록 2. 신문, 광고를 내거나 찾아 보았음 3. 취직시험 응시 4. 친구, 친지에게 부탁 5. 사업체방문 6. 자영업준비 7. 기타 () 나-2 구 직 기 간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나-3 전직유무 및 실업등기 전에 하던일을 왜 그만 두었습니까? 1. 신규실업(※ 질문끝) 2. 보수 및 작업환경 불만족 3. 장래성이 없어서 4. 폐업, 해고 5. 정년퇴직 6. 자기사업을 하려고 7. 사업부진 8. 기타 ()	주로 하는일을 원합니까, 가사나 통학을 하면서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합니까?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다-2 비 구 직 이 유 그러면 지난주에 구해보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3. 자격이 부족하여서 4. 기타 () 다-3 6개월간의 구직여부 지난 6개월간 한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하여 본 일이 있었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구해보지 않았음 (※ 질문 끝)

라-1 산 업	라-2 직 업	라-3 종사상의 지위	라-4 사업체의 종업원규모	라-5 소 득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기관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활동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하셨던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1. 고 용 주 } 자영근로자 12. 자 명 자 } 13. 가족종사자 } 21. 상 용 } 임금근로자 22. 임 시 } 23. 일 용 }	다니시던 직장 또는 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5인미만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이상 5. 50~99인 (※ 실업자는 질문 끝)	지난 1개월동안 총소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 " 3. 10~20 " 4. 20~30 " 5. 30만원 이상 6. 무보수, 농림어업 (※ 질문 끝)

가구원번호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

① 가구원 이름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관계	⑥ 교 육 정 도
1. 일련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input type="text"/>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1. 남 자 2. 여 자	정확한 실제나이는 몇살입니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양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결혼하였습니까? 1. 미 혼 2. 유 배우 3. 사 별 4. 이 혼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국민학교 이하 2. 중 학교 3. 고등학교 4. 초대 및 전문대 5. 대학이상 1. 출 업 2. 계 학 3. 중 퇴 4. 안다녔음

⑦ 활 동 상 태	⑧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⑩ 1 주 간의 구 직 여 부	⑪ 취 업 가 능 성 여 부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 1. 일하였음 <<(가-1)로 감>> 2. 일시휴직 6. 연소·연로 3. 구직활동 7. 불 구 4. 가 사 8. 기타(이유:) 5. 통 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20. 없었음 ↳ 왜 지난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병 } <<(가-1)로 감>> 12. 연가 또는 휴가 } 13. 노동쟁의 } 14. 조업중단 } 15. 기 타 ()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자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 } <<(10)로 감>>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못하였음 · 일시적 병 · 일기불순 · 예비군훈련 소집 · 가족의 관혼상제 · 구직결과대기(30일 이내) 3. 구해보지 않았음 <<(10)로 감>>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나-1)로 감>> 2. 없었음 ⑫ 취 업 의 사 유 무 지금이라도 알맞는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다-1)로 감>> 2. 하지 않겠음(※ 질문끝)

가-1 취 업 시 간	가-2 평상시 취업시간	나-1 구 직 경 로	다-1 원하는 일의 형태
지난주 모든 일을 통털어 몇시간 일 했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8시간미만 무급가족 종사자 <<(10)로 감>> 2. 1~35시간 <<(가-2)로 감>> 3. 36시간 이상 <<(라-1)로 감>> ※ 일시 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2. 1~35시간」에 ○표할 것	평상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 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 왜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건강때문에 12. 가사, 통학으로 13.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14. 일거리가 없어서 15.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음 ↳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36시간 미만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21. 일시적병 22. 연가, 휴가 23. 조업중단(일기불순, 기계고장등) 24. 조업단축 25. 기타 ()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직업소개소에 등록 2. 신문, 광고를 내거나 찾아 보았음 3. 취직시험 응시 4. 친구, 친지에게 부탁 5. 사업체방문 6. 자영업준비 7. 기타 () 나-2 구 직 기 간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나-3 전직유무 및 실업동기 전에 하던일을 왜 그만 두었습니까? 1. 신규실업(※ 질문끝) 2. 보수 및 작업환경 불만족 } <<(라-1)로 감>> 3. 장래성이 없어서 } 4. 폐업, 해고 } 5. 정년퇴직 } 6. 자기사업을 하려고 } 7. 사업부진 } 8. 기타 ()	주로 하는일을 원합니까, 가사나 통학을 하면서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합니까?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다-2 비 구 직 이 유 그러면 지난주에 구해보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3. 자격이 부족하여서 4. 기타 () 다-3 6개월간의 구직여부 지난 6개월간 한 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구해보지 않았음 (※ 질문끝)

라-1 산 업	라-2 직 업	라-3 종사상의 지위	라-4 사업체의 종업원규모	라-5 소 득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기관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활동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하셨던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1. 고 용 주 } 12. 자 영 자 } 자영근로자 13. 가족종사자 } 21. 상 용 } 22. 임 시 } 임금근로자 23. 일 용 }	다니시던 직장 또는 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5인미만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이상 5. 50~99인 (※ 실업자는 질문 끝)	지난 1개월동안 총소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 " " 3. 10~20 " " 4. 20~30 " " 5. 30만원 이상 6. 무보수, 농림어업 (※ 질문 끝)

가구원번호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

① 가구원 이름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관계	⑥ 교 육 정 도
1. 일련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input type="text"/>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1. 남 자 2. 여 자	정확한 실제나이는 몇살입니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양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결혼하였습니까? 1. 미 혼 2. 유 배우 3. 사 별 4. 이 혼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국민학교 이하 2. 중 학교 3. 고등학교 4. 초대 및 전문대 5. 대학이상 1. 졸 업 2. 재 학 3. 중 퇴 4. 안다녔음

⑦ 활 동 상 태	⑧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⑩ 1 주간의 구직여부	⑪ 취업 가능성 여부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일하였음 <<(가-1)로 감>> 2. 일시휴직 6. 연소·연로 3. 구직활동 7. 불 구 4. 가 사 8. 기타(이유:) 5. 통 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20. 없었음 ↳ 왜 지난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병 12. 연가 또는 휴가 <<(가-1)로 감>> 13. 노동쟁의 14. 조업중단 15. 기 타 ()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자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못하였음 <<⑩로 감>> • 일시적 병 • 일기불순 • 예비군훈련 소집 • 가족의 관혼상제 • 구직결과대기(30일 이내) 3. 구해보지 않았음 <<⑩로 감>>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나-1)로 감>> 2. 없었음 ⑫ 취업 의 사 유 무 지금이라도 알맞는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다-1)로 감>> 2. 하지 않겠음(※ 질문 끝)

가-1 취 업 시 간	가-2 평상시 취업시간	나-1 구 직 경 로	다-1 원하는 일의 형태
지난주 모든 일을 통털어 몇시간 일 했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8시간미만 무급가족 종사자 <<⑩으로 감>> 2. 1~35시간 <<(가-2)로 감>> 3. 36시간 이상 <<(라-1)로 감>> ※ 일시 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2. 1~35시간」에 ○표할 것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 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건강때문에 12. 가사, 통학으로 13.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14. 일거리가 없어서 15.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음 ↳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36시간 미만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21. 일시적병 22. 연가, 휴가 23. 조업중단(일기불순, 기계고장등) 24. 조업단축 25. 기타 ()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직업소개소에 등록 2. 신문, 광고를 내거나 찾아 보았음 3. 취직시험 응시 4. 친구, 친지에게 부탁 5. 사업체방문 6. 자영업준비 7. 기타 () 나-2 구 직 기 간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나-3 전직유무 및 실업동기 전에 하던일을 왜 그만 두었습니까? 1. 신규실업(※ 질문 끝) 2. 보수 및 작업환경 불만족 3. 장래성이 없어서 4. 폐업, 해고 5. 정년퇴직 6. 자기사업을 하려고 7. 사업부진 8. 기타 () <<(라-1)로 감>>	주로 하는일을 원합니까, 가사나 통학을 하면서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합니까?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다-2 비 구 직 이 유 그러면 지난주에 구해보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3. 자격이 부족하여서 4. 기타 () 다-3 6개월간의 구직여부 지난 6개월간 한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하여 본 일이 있었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구해보지 않았음 (※ 질문 끝)

라-1 산 업	라-2 직 업	라-3 종사상의 지위	라-4 사업체의 종업원규모	라-5 소 득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기관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활동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하셨던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1. 고 용 주 } 자영근로자 12. 자 영 자 } 13. 가족종사자 } 21. 상 용 } 임금근로자 22. 임 시 } 23. 일 용 }	다니시던 직장 또는 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5인미만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이상 5. 50~99인 (※ 실업자는 질문 끝)	지난 1개월동안 총소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 " " 3. 10~20 " " 4. 20~30 " " 5. 30만원 이상 6. 무보수, 총급여 (※ 질문 끝)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승인번호: 111-21-07

통계법 제 8 조 (비밀의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통계조사표

1986년

※ 조사요원 기록사항	
통계사무소명	
조사자성명	

※ 자료처리요원기입란		
내검자성명		/
천공자성명		/
검공자성명		/

※ 조사요원의견란	

※ 관리사항	조사구번호	<input type="text"/>
	구역 및 거처번호	<input type="text"/>
	가구번호	<input type="text"/>
	가구당매수	<input type="text"/> 매

※ 가구구분	1. 농가 2. 비농가
--------	-----------------

※ 가구원상황	구분	남	여	계
	85년가구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6년가구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4세 이상 가구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가구원	무응답	보건	소득	보건및 소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가구원 모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전가구원)

) 가구원 연번호	② 이 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유 병 기 간		⑥ 치 료 방 법					
				지난 2주일(6.8~6.21) 동안 아팠던 일이 있습니까? , 어떻게 치료를 하였습니까?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1.남자 2.여자	만 세	1. 있다 2. 없다	11. 아팠던 일 수	12. 누웠던 일 수	1. 병(의)원치료	2. 약국치료	3. 한방치료	4. 기타	5. 없다.

⑦ 귀댁에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맨먼저 가는곳은 어디입니까?	⑧ 귀댁에서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병원(또는 의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⑨ 귀댁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⑩ 귀댁의 실질소득이 10년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리라 생각하십니까?
1. 약국 2. 병(의)원 3. 보건소 4. 한의원 5. 기타()	1. 걸어서 분 2. 버스로 분	1. 상상 2. 상중 3. 상하 4. 중상 5. 중중 6. 중하 7. 하상 8. 하중 9. 하하	1. 많이나아짐 2. 약간 나아짐 3. 동일함 4. 약간 나빠짐 5. 많이나빠짐

⑪ 작년 1년동안('85.1.1~12.31)의 임대료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현물인 경우 현금 평가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⑫ 작년 1년동안의 수증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현물인 경우 현금 평가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건물임대료(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 방 등) 전세 _____ 천원 (월세 _____ 천원×□□개월 총액 _____ 천원) 2. 토지임대료(논, 밭, 과수원등).....연간 _____ 천원 3. 기타 재산임대료(자동차, 전화, 허가증, 면허증, 자격증, 특허권등).....연간 _____ 천원	1. 정부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연간 _____ 천원 2. 가족친지에게 받은 보조금: ()로부터.....연간 _____ 천원 (가구주와관계) 3. 가족친지에게 보내준 보조금: ()에게.....연간 _____ 천원 (가구주와관계)

⑬ 작년 1년동안('85.1.1~12.31)의 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1. 건물임대료(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 방 등) 전세 _____ 천원 (월세 _____ 천원×□□개월 총액 _____ 천원) 2. 토지임대료(논, 밭, 과수원등).....연간 _____ 천원 3. 기타 재산임대료(자동차, 전화, 허가증, 면허증, 자격증, 특허권등).....연간 _____ 천원

1. []년 []월 []일 2. []세 3. []성 4. []구 []동 []가		⑩ 배우 관계 1. 미혼 2. 이혼 3. 재혼 4. 기타	⑪ 건강 상태 1. 건강 2. 약 3. 중약 4. 중증 5. 극중증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4. []년 []월 []일 5. []년 []월 []일		⑫ 활동 상태 1. 학업중 2. 전업직 21. 주 1회 이상 22. 주 2회 이상 23. 주 3회 이상 24. 주 4회 이상 25. 주 5회 이상	⑬ 건강 관리 1. 건강 2. 약 3. 중약 4. 중증 5. 극중증

부 건

• 14 세이상 모든 가구원은 해당란의 번호 한곳에만 ○표를 하여 주십시오.

14세 이상	⑭ 의료인 (의사, 약사)의 의료행위 (치료, 처방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믿을만 하다. 2. 믿을만 하다. 3. 그저 그렇다. 4. 믿을 수 없다. 5. 전혀 믿지 못한다.	⑮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술을 전혀 마신적이 없다. 2. 술을 끊었음. 3. 월 1회미만 마신다. 4. 월 2~4회 마신다. 5. 주 2~4회 마신다. 6. 거의 매일 마신다.	⑯ 귀하의 주량 이상으로 과음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1. 없 다. 2. 1년 3회 이내 3. 3개월에 1~2회 4. 1개월에 1~3회 5. 1주일에 1회이상
	⑰ 귀하는 건강유지를 위하여 현재 어떤 방법을 행하고 계십니까? (치료방법제외) 1. 운동 (등산, 조깅포함) 을 한다. 2. 식사를 조절한다. 3. 담배·술 등을 절제한다. 4. 보약 또는 영양제를 먹는다. 5. 기타방법 () 6.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⑱ 귀하는 연령에 비하여 어느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치 못하다. 5. 매우 나쁜 편이다.	

• 15 세이상 모든 여자는 해당란의 번호에 ○표 또는 숫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5세 이상	⑳ 지난 1년 (85.1.1 ~ 12.31) 동안 분만 (사산은 제외)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1. 있 다 2. 없 다 (뒷면으로 감)	㉑ 어떤 분이 분만을 도왔습니까? 1. 의 사 2. 조 산 원 3. 보 건 요 원 4. 가 족·친 지 5. 기 타	㉒ 어디서 분만을 하셨습니까? 1. 병 (의) 원 2. 집 3. 기 타	㉓ 임신중에 진찰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에게 몇회를 받았습니까? 1. 있다 2. 없다	11. 의 사 [] 회 12. 조 산 원 [] 회 13. 보 건 요 원 [] 회 14. 기타의료인 [] 회
--------	---	--	--	---	--

1985년 총소득

1. 작년 (1985.1.1 ~ 12.31) 1년간의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2. 근로소득에는 임금 및 봉급 (시간급, 일당, 월급) 이 해당되며, 소득세, 기여금, 보험료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물건으로 받은것도 포함)
3. 사업소득에는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4. 작년 1년동안에 일자리를 바꾸었거나, 두가지 이상의 일을 겸업하였을 때에는 구분하여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근로소득

< 작년 (1985.1.1 ~ 12.31) 에 공사장, 남의 논, 밭, 직장등에서 받은 일당, 임금 및 월급의 총액 (세금도포함) 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㉓ 작년 1년 (1985.1.1 ~ 12.31) 동안 어디서 일하였으며 몇 개월동안 일을 하였습니까?	㉔ 임금 및 월급 작년에 받은 임금 및 월급은 모두 얼마입니까? (소득세 기여금, 보험료, 각종수당 포함)	㉕ 상 여 금 (보 너 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 (보너스) 은 얼마입니까?	㉖ 기 타 소 득 그외 소득은 얼마입니까? (학비보조금, 부수입, 팁등)	㉗ 근로소득합계 작년 1년간 받은 근로소득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1 · 직장 및 사업체이름 _____ □□ 월부터 □□ 월까지 () 개월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 정기 상여금 1. □□□ % · 비정기 상여금 2. 총액 _____ 원	1. 월평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연 간 총 액 _____ 원
2 · 직장 및 사업체이름 _____ □□ 월부터 □□ 월까지 () 개월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 정기 상여금 1. □□□ % · 비정기 상여금 2. 총액 _____ 원	1. 월평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3 · 직장 및 사업체이름 _____ □□ 월부터 □□ 월까지 () 개월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 정기 상여금 1. □□□ % · 비정기 상여금 2. 총액 _____ 원	1. 월평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사업소득

< 작년 (1985.1.1 ~ 12.31) 1년간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 얻은 소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㉘ 작년 1년 (1985.1.1 ~ 12.31) 동안 어디서 일하였으며 몇 개월동안 일을 하였습니까?	㉙ 사 업 지 출 비 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얼마입니까? (상품구입비, 재료비, 인건비, 집세, 지급이자,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등)	㉚ 사 업 수 입 작년 1년간의 총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총판매액, 총수수료 등 총외형거래액, 소득세 포함)	㉛ 사 업 소 득 작년 1년간의 사업 소득은 얼마입니까? (사업수입 - 사업지출비)
1 · 사업체 및 점포이름 _____ □□ 월부터 □□ 월까지 () 개월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연 간 총 액 _____ 원
2 · 사업체 및 점포이름 _____ □□ 월부터 □□ 월까지 () 개월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3 · 사업체 및 점포이름 _____ □□ 월부터 □□ 월까지 () 개월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1. 월 평 균 _____ 원 2. 총 액 _____ 원	

㉜ 부 업 소 득

작년 1년 (85.1.1 ~ 12.31) 동안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1. 일의종류 _____
2. 소 득 _____ 원

㉝ 연 금

작년 1년 (85.1.1 ~ 12.31) 동안 받은 총연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총액 _____ 원

㉞ 이 자 및 배 당 금

작년 1년간에 받은 이자 및 배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1. 은행 및 빌려준돈의 이자 (정기예금, 금전신탁, 회사, 상점, 개인, 공채, 회사채등의 이자) _____ 원
2. 주식 등에서 받은 배당금..... _____ 원

승인번호 : 111-11-18

통계법 제 8 조 (비밀의 보호)
 통계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
 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
 호되어야 한다.

1986년 고용구조특별조사표

※ <조사요원은 다음 사항을 응답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이 조사는 매년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국민 모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구원은 이 집에서 항상 같이 먹고 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장기간 집을 떠나 있는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 여행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잠깐 다니러 온 친척, 친구 등은 제외됩니다.

관 리 사 항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거처 및 가구번호	가구당부수
				<input type="checkbox"/> 부중 <input type="checkbox"/> 부

가 구 원 가 명 구 부					
번 호	가 구 원 성 명	가 구 주 와 의 관 계	성 별	연 령	비 고
1			남, 여		
2			남, 여		
3			남, 여		
4			남, 여		
5			남, 여		
6			남, 여		
7			남, 여		
8			남, 여		
9			남, 여		
10			남, 여		

가 구 원 상 황				
구 분	남	여	계	
총가구원				
제 외 자	14세미만			
	14세이상			
대상가구원				
취업자				
실업자				
가구구분	1. 농 가 2. 비농 가			

조사요원 기입사항	시 도 명	조사자 성 명	응답자성명(전화번호)	조사요원 의 견 란

인적사항	① 가구원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 관계	⑥ 교육 정도
	• 성 명 • 일련 번호 <input type="text"/>			1. 남 자 2. 여 자	세는 나이(), 띠() 1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양 · 음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생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1. 미 혼 2. 유배우 3. 사 별 4. 이 혼

확인사항	⑦ 활동 상태	⑧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⑨ 1주간의 구직 여부	⑩ 취업가능성여부	⑪ 취업의사유무
	지난 일주간(1986. 11.9~11.15)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일하였음 11. 주로 일하였음 } 가1로 12. 틈틈이 일하였음 } <input type="checkbox"/> 조금도 일하지 않았음 21. 일시휴직 25. 연소연로 22. 구직활동 26. 심신장애 23. 가 사 27. 기 타 24. 통 학 ()	지난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갖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30. 없었음 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병 } 가1로 12. 연가 또는 휴가 } 13. 노동쟁의 } 14. 조업중단 } 20. 기타()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 • 일시적병 • 일기불순 • 자영업준비 •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소집 • 직장 또는 구직결과대기 • 가족의 관혼상제 3. 구해보지 않았음 ⑩로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⑩로 2. 없었음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⑩로 2. 하지 않겠음 ⑩로

취업자 사항

가1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직장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input type="text"/>	가2 무슨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 <input type="text"/>	가3 현재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 1. 상 용 4. 고 용 주 2. 임 시 5. 자 영 자 3. 일 용 6. 무급가족 종 사 자	가4 현직장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체) 2. 회 사 3. 기타법인단체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가5 현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가6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였습니까? 1. 친구·친지알선 2. 취직시험 3. 사업체 직접방문 4. 신문광고 5. 직업소개소 6. 자기사업 7. 기타()
가7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input type="text"/>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35시간 가8로 2. 36시간이상 가9로 ※ 일시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1. 1~35」에 ○표할 것	가8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건강때문에 21. 일거리가 없어서 12. 일거리가 없어서 22. 자재부족으로 13. 가사, 통학으로 23. 공장 또는 시설수리 14.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24. 개인 또는 가정사정 15. 기타() 25. 일기불순으로 26. 기타()	가9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1.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가11로 2.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음 } 3.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음	가10 다른 직장(일)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이 적어서 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3. 적성에 맞지 않아서 4. 작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5.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6. 정년이 되어서 7. 기타()		
가11 현 직장(사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6개월 미만 3. 6~12개월 미만 4. 1~3년미만 5. 3~5년미만 } 가14로 6. 5~10년미만 } 7. 10~20년미만 } 8. 20년이상 }	가12 현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12개월 미만 5. 12개월 이상 6. 없었음	가13 지난 3년간(1983. 11. 16~1986. 11. 15) 직장(사업체)을 옮긴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4. 없음	가14 현 직장(일)에 취업하기 전에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11. 사설학원에서 12.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13. 사업체부설 기관에서 20. 받지 않았음 가16으로	가15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취업하는데에 유용했습니까? 10. 유용했음 <input type="checkbox"/> 유용하지 않았음 21. 취업기회가 없어서 22. 훈련수준이 맞지 않아서 23. 취업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24. 기타()	가16 지난 1개월 동안 귀하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만원 미만 3. 10~20만원 미만 4. 20~30만원 미만 5. 30~50만원 미만 6. 50~70만원 미만 7. 70~100만원 미만 8. 100만원 이상 9.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 부문종사자 가16로

실업자 사항

<p>나1 구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 일</p> <p>2. 틈틈이 하는 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 라3으로</p>	<p>나2 월급여가 적어도 얼마수준이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p> <p>1. 5만원 미만</p> <p>2. 5~10만원 미만</p> <p>3. 10~15만원 미만</p> <p>4. 15~20만원 미만</p> <p>5. 20~30만원 미만</p> <p>6. 30만원 이상</p>	<p>나3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p> <p>1. 친구·친지 알선</p> <p>2. 취직시험</p> <p>3. 사업체 직접방문</p> <p>4. 신문광고를 내거나 찾아봄</p> <p>5. 직업소개소</p> <p>6.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음</p> <p>7. 기타()</p>	<p>나4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p> <p>□ 개월</p> <p>(년 월)</p>	<p>나5 전에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p> <p>1. 있었음</p> <p>2. 없었음 라10으로</p>	<p>나6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였습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_____</p> <p>● 사업체의 주된활동</p> <p>_____</p> <p>※ □ □ □</p>
<p>나7 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p> <p>● 맡은 일의 종류</p> <p>_____</p> <p>● 직명 또는 직위</p> <p>_____</p> <p>※ □ □ □</p>	<p>나8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p> <p>2. 임시 5. 자영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종사자</p>	<p>나9 전에 하였던 일을 왜 그만두었습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나10 취직(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취업기회가 없어서</p> <p>2. 취업정보를 몰라서</p> <p>3.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p> <p>4. 남녀차별때문에</p> <p>5.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6. 기타()</p>	<p>나11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원합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원함</p> <p>11. 자비로</p> <p>12. 국비로</p> <p>13. 사업체 부담으로</p> <p>20. 원하지 않음.</p>	<p>나12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p> <p>1. 가족 및 친지보조</p> <p>2. 벌어들인 소득으로</p> <p>3. 빚을 얻어서</p> <p>4. 영세민보호</p> <p>5. 재산소득(이자, 집세등)</p> <p>6. 연금</p> <p>7. 기타()</p> <p>라1로</p>

비경제활동인구 사항

<p>다1 원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일</p> <p>2. 틈틈이 하는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p>	<p>다2 직장 또는 일거리를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생활비를 벌려고</p> <p>2.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p> <p>3. 시간이 남아서</p> <p>4. 보다 나은 경험(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p> <p>5. 기타()</p>	<p>다3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p> <p>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p> <p>3. 자격이 부족하여서</p> <p>4. 교통이 불편하여서</p> <p>5. 기타()</p>	<p>다4 지난 6개월동안 한 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p> <p>1. 구해보았음</p> <p>2. 구해보지 않았음</p> <p>라1로</p>
---	--	--	--

노동력유동사항

<p>라1 1년전(1985. 11. 10~1985. 11. 16)에 살던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p> <p>1. 같은 구·시·군</p> <p>2. 다른 구·시·군</p> <p>() 시·도</p> <p>() 구·시·군</p> <p>3. 기타()</p> <p>□ □ □ □</p>	<p>라2 그당시에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p> <p>1. 주로 일하였음</p> <p>2. 틈틈이 일하였음</p> <p>3. 구직활동</p> <p>4. 가 사</p> <p>5. 통 학</p> <p>6. 연소·연로</p> <p>7. 심신장애</p> <p>8. 기 타</p> <p>질문끝</p>	<p>라3 그당시 다니던 직장(일)과 현재의 직장(일)과는 어떻게 됩니까?</p> <p>1. 동 일 함 라5로</p> <p>2. 다 름</p> <p>3. 그만 두었음</p>	<p>라4 그당시 다니던 직장을 옮긴(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라5 그당시 직장의 주된 산업 활동은 무엇입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_____</p> <p>● 사업체의 주된 활동</p> <p>_____</p> <p>※ □ □ □</p>	<p>라6 그당시 직장(일)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p> <p>● 맡은 일의 종류</p> <p>_____</p> <p>● 직명 또는 직위</p> <p>_____</p> <p>※ □ □ □</p>	<p>라7 그당시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p> <p>2. 임시 5. 자영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종사자</p>	<p>라8 그당시 직장(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였습니까?</p> <p>1. 1~4인 6. 100~299인</p> <p>2. 5~9인 7. 300~499인</p> <p>3. 10~19인 8. 500~999인</p> <p>4. 20~49인 9. 1000인 이상</p> <p>5. 50~99인</p> <p>질문끝</p>

인적사항	① 가구원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 관계	⑥ 교육 정도
	• 성 명 • 일련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 남 자 2. 여 자	세는 나이(), 띠() 1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양 · 율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생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1. 미 혼 2. 유배우 3. 사 별 4. 이 혼

확인사항	⑦ 활동 상태	⑧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⑨ 1주간의 구직 여부	⑩ 취업가능성여부	⑪ 취업의사유무
	지난 일주간(1986. 11.9~11.15)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일하였음 11. 주로 일하였음 } 가1로 12. 틈틈이 일하였음 } <input type="checkbox"/> 조금도 일하지 않았음 21. 일시휴직 25. 연소연로 22. 구직활동 26. 심신장애 23. 가 사 27. 기 타 24. 통 학 ()	지난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갖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30. 없었음 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병 } 가1로 12. 연가 또는 휴가 } 13. 노동쟁의 } 14. 조업중단 } 20. 기타()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 • 일시적병 • 일기불순 • 자영업준비 •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소집 • 직장 또는 구직결과대기 • 가족의 관혼상제 3. 구해보지 않았음 ㉑로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㉒로 2. 없었음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㉓로 2. 하지 않겠음 ㉔로

취업자 사항

가1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직장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input type="text"/>	가2 무슨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 <input type="text"/>	가3 현재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 1. 상 용 4. 고 용 주 2. 임 시 5. 자 영 자 3. 일 용 6. 무급가족 종 사 자	가4 현직장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체) 2. 회 사 3. 기타법인단체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가5 현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가6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였습니까? 1. 친구·친지알선 2. 취직시험 3. 사업체 직접방문 4. 신문광고 5. 직업소개소 6. 자기사업 7. 기타()
가7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input type="text"/>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35시간 가8로 2. 36시간이상 가9로 ※ 일시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1. 1~35」에 ○표할 것	가8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건강때문에 21. 일거리가 없어서 12. 일거리가 없어서 22. 자재부족으로 13. 가사, 통학으로 23. 공장 또는 시설수리 14.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24. 개인 또는 가정사정 15. 기타() 25. 일기불순으로 26. 기타()	가9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1.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가10로 2.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음 } 3.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음	가10 다른 직장(일)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이 적어서 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3. 적성에 맞지 않아서 4. 작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5.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6. 정년이 되어서 7. 기타()		
가11 현 직장(사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6개월 미만 3. 6~12개월 미만 4. 1~3년미만 5. 3~5년미만 } 가14로 6. 5~10년미만 } 7. 10~20년미만 } 8. 20년이상 }	가12 현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12개월 미만 5. 12개월 이상 6. 없었음	가13 지난 3년간(1983. 11. 16~1986. 11. 15) 직장(사업체)을 옮긴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4. 없음	가14 현 직장(일)에 취업하기 전에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11. 사설학원에서 12.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13. 사업체부설 기관에서 20. 받지 않았음 가16으로	가15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취업하는데에 유용했습니까? 10. 유용했음 <input type="checkbox"/> 유용하지 않았음 21. 취업기회가 없어서 22. 훈련수준이 맞지 않아서 23. 취업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24. 기타()	가16 지난 1개월 동안 귀하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만원 미만 3. 10~20만원 미만 4. 20~30만원 미만 5. 30~50만원 미만 6. 50~70만원 미만 7. 70~100만원 미만 8. 100만원 이상 9.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 부문종사자 } 가16로

실업자 사항

<p>나1 구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 일</p> <p>2. 틈틈이 하는 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 라3으로</p>	<p>나2 월급여가 적어도 얼마수준이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p> <p>1. 5만원 미만</p> <p>2. 5~10만원 미만</p> <p>3. 10~15만원 미만</p> <p>4. 15~20만원 미만</p> <p>5. 20~30만원 미만</p> <p>6. 30만원 이상</p>	<p>나3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p> <p>1. 친구·친지 알선</p> <p>2. 취직시험</p> <p>3. 사업체 직접방문</p> <p>4. 신문광고를 내거나 찾아봄</p> <p>5. 직업소개소</p> <p>6.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음</p> <p>7. 기타()</p>	<p>나4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p> <p>□ 개월</p> <p>(년 월)</p>	<p>나5 전에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p> <p>1. 있었음</p> <p>2. 없었음 라10으로</p>	<p>나6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였습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_____</p> <p>● 사업체의 주된활동</p> <p>_____</p> <p>※ □ □ □</p>
<p>나7 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p> <p>● 맡은 일의 종류</p> <p>_____</p> <p>● 직명 또는 직위</p> <p>_____</p> <p>※ □ □ □</p>	<p>나8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p> <p>2. 임시 5. 자영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종사자</p>	<p>나9 전에 하였던 일을 왜 그만두었습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나10 취직(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취업기회가 없어서</p> <p>2. 취업정보를 몰라서</p> <p>3.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p> <p>4. 남녀차별때문에</p> <p>5.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6. 기타()</p>	<p>나11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원합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원함</p> <p>11. 자비로</p> <p>12. 국비로</p> <p>13. 사업체 부담으로</p> <p>20. 원하지 않음.</p>	<p>나12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p> <p>1. 가족 및 친지보조</p> <p>2. 벌어들인 소득으로</p> <p>3. 빚을 얻어서</p> <p>4. 영세민보호</p> <p>5. 재산소득(이자, 집세등)</p> <p>6. 연금</p> <p>7. 기타()</p> <p>라1로</p>

비경제활동인구 사항

<p>다1 원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일</p> <p>2. 틈틈이 하는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p>	<p>다2 직장 또는 일거리를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생활비를 벌려고</p> <p>2.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p> <p>3. 시간이 남아서</p> <p>4. 보다 나은 경험(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p> <p>5. 기타()</p>	<p>다3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p> <p>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p> <p>3. 자격이 부족하여서</p> <p>4. 교통이 불편하여서</p> <p>5. 기타()</p>	<p>다4 지난 6개월동안 한 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p> <p>1. 구해보았음</p> <p>2. 구해보지 않았음</p> <p>라1로</p>
---	--	--	--

노동력유동사항

<p>라1 1년전(1985. 11. 10~1985. 11. 16)에 살던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다른가?</p> <p>1. 같은 구·시·군</p> <p>2. 다른 구·시·군</p> <p>() 시·도</p> <p>() 구·시·군</p> <p>3. 기타()</p> <p>□ □ □ □</p>	<p>라2 그당시에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p> <p>1. 주로 일하였음</p> <p>2. 틈틈이 일하였음</p> <p>3. 구직활동</p> <p>4. 가 사</p> <p>5. 통 학</p> <p>6. 연소·연로</p> <p>7. 심신장애</p> <p>8. 기 타</p> <p>질문끝</p>	<p>라3 그당시 다니던 직장(일)과 현재의 직장(일)과는 어떻게 다른가?</p> <p>1. 동 일 함 라5로</p> <p>2. 다 름</p> <p>3. 그만 두었음</p>	<p>라4 그당시 다니던 직장을 옮긴(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라5 그당시 직장의 주된 산업 활동은 무엇입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_____</p> <p>● 사업체의 주된 활동</p> <p>_____</p> <p>※ □ □ □</p>	<p>라6 그당시 직장(일)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p> <p>● 맡은 일의 종류</p> <p>_____</p> <p>● 직명 또는 직위</p> <p>_____</p> <p>※ □ □ □</p>	<p>라7 그당시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p> <p>2. 임시 5. 자영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종사자</p>	<p>라8 그당시 직장(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였습니까?</p> <p>1. 1~4인 6. 100~299인</p> <p>2. 5~9인 7. 300~499인</p> <p>3. 10~19인 8. 500~999인</p> <p>4. 20~49인 9. 1000인 이상</p> <p>5. 50~99인</p> <p>질문끝</p>

인 적 사 항	① 가구원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 관계	⑥ 교 육 정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명 		1. 남 자 2. 여 자	세는 나이(), 띠() 19 년 양 · 음 월 일생 만 세	1. 미 혼 2. 유배우 3. 사 별 4. 이 혼	1. 국민학교 } 1. 졸 업 2. 중 학교 } 2. 재 학 3. 고등학교 } 4. 초대 및 전문대 } 3. 중 퇴 5. 대 학 } 6. 대 학 원 이상 } 7. 안다녔음

확 인 사 항	⑦ 활 동 상 태	⑧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⑨ 1주 간의 구 직 여 부	⑩ 취업가능성여부	⑪ 취업의사유무
	지난 일주간(1986. 11. 9~11. 15)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일하였음 11. 주로 일하였음 } 가1로 12. 틈틈이 일하였음 } <input type="checkbox"/> 조금도 일하지 않았음 21. 일시휴직 25. 연소연로 22. 구직활동 26. 심신장애 23. 가 사 27. 기 타 24. 통 학 ()	지난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갖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30. 없었음 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병 } 가1로 12. 연가 또는 휴가 } 13. 노동쟁의 } 14. 조업중단 } 20. 기타()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 ● 일시적병 ● 일기불순 ● 자영업준비 ●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소집 ● 직장 또는 구직결과대기 ● 가족의 관혼상제 3. 구해보지 않았음 (10로)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나1로) 2. 없었음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다1로) 2. 하지 않겠음 (라1로)

취업자 사항

가1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직장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가2 무슨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	가3 현재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 1. 상 용 4. 고 용 주 2. 임 시 5. 자 영 자 3. 일 용 6. 무급가족 종 사 자	가4 현직장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체) 2. 회 사 3. 기타법인단체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가5 현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가6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였습니까? 1. 친구·친지알선 2. 취직시험 3. 사업체 직접방문 4. 신문광고 5. 직업소개소 6. 자기사업 7. 기타()
가7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35시간 (가8로) 2. 36시간이상 (가9로) ※ 일시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1. 1~35」에 ○표할 것	가8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건강때문에 12. 일거리가 없어서 13. 가사, 통학으로 14.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15. 기타() 21. 일거리가 없어서 22. 자재부족으로 23. 공장 또는 시설수리 24. 개인 또는 가정사정 25. 일기불순으로 26. 기타()	가9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1.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가11로 2.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음 } 3.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음	가10 다른 직장(일)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이 적어서 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3. 적성에 맞지 않아서 4. 작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5.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6. 정년이 되어서 7. 기타()		
가11 현 직장(사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6개월 미만 3. 6~12개월 미만 4. 1~3년미만 5. 3~5년미만 } 가14로 6. 5~10년미만 } 7. 10~20년미만 } 8. 20년이상 }	가12 현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12개월 미만 5. 12개월 이상 6. 없었음	가13 지난 3년간(1983. 11. 16~1986. 11. 15) 직장(사업체)을 옮긴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4. 없음	가14 현 직장(일)에 취업하기 전에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11. 사설학원에서 12.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13. 사업체부설 기관에서 20. 받지 않았음 (가16으로)	가15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취업하는데에 유용했습니까? 10. 유용했음 <input type="checkbox"/> 유용하지 않았음 21. 취업기회가 없어서 22. 훈련수준이 맞지 않아서 23. 취업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24. 기타()	가16 지난 1개월 동안 귀하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만원 미만 3. 10~20만원 미만 4. 20~30만원 미만 5. 30~50만원 미만 6. 50~70만원 미만 7. 70~100만원 미만 8. 100만원 이상 9.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 부문종사자 } (라16로)

실업자사항

<p>나1 구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 일</p> <p>2. 틈틈이 하는 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 〈나3으로〉</p>	<p>나2 월급여가 적어도 얼마수준이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p> <p>1. 5만원 미만</p> <p>2. 5~10만원 미만</p> <p>3. 10~15만원 미만</p> <p>4. 15~20만원 미만</p> <p>5. 20~30만원 미만</p> <p>6. 30만원 이상</p>	<p>나3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p> <p>1. 친구·친지 알선</p> <p>2. 취직시험</p> <p>3. 사업체 직접방문</p> <p>4. 신문광고를 내거나 찾아봄</p> <p>5. 직업소개소</p> <p>6.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음</p> <p>7. 기타()</p>	<p>나4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p> <p>□ 개월</p> <p>(년 월)</p>	<p>나5 전에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p> <p>1. 있었음</p> <p>2. 없었음 〈나10으로〉</p>	<p>나6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였습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 사업체의 주된활동</p> <p>※ □ □ □</p>
<p>나7 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p> <p>● 말은 일의 종류</p> <p>● 직명 또는 직위</p> <p>※ □ □ □</p>	<p>나8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 용 주</p> <p>2. 임 시 5. 자 영 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 종 사 자</p>	<p>나9 전에 하였던 일을 왜 그만두었습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나10 취직(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취업기회가 없어서</p> <p>2. 취업정보를 몰라서</p> <p>3.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p> <p>4. 남녀차별때문에</p> <p>5. 보수가 낮거나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p> <p>6. 기타()</p>	<p>나11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원합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원함</p> <p>11. 자비로</p> <p>12. 국비로</p> <p>13. 사업체 부담으로</p> <p>20. 원하지 않음.</p>	<p>나12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p> <p>1. 가족 및 친지보조</p> <p>2. 벌여놓은 소득으로</p> <p>3. 빚을 얻어서</p> <p>4. 영세민보호</p> <p>5. 재산소득(이자, 집세등)</p> <p>6. 연금</p> <p>7. 기타()</p> <p>〈라1로〉</p>

비경제활동인구사항

<p>다1 원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 일</p> <p>2. 틈틈이 하는 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p>	<p>다2 직장 또는 일거리를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생활비를 벌려고</p> <p>2.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p> <p>3. 시간이 남아서</p> <p>4. 보다 나은 경험(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p> <p>5. 기타()</p>	<p>다3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p> <p>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p> <p>3. 자격이 부족하여서</p> <p>4. 교통이 불편하여서</p> <p>5. 기타()</p>	<p>다4 지난 6개월동안 한 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p> <p>1. 구해보았음</p> <p>2. 구해보지 않았음</p> <p>〈라1로〉</p>
---	--	--	--

노동력유동사항

<p>라1 1년전(1985. 11. 10~1985. 11. 16)에 살던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p> <p>1. 같은 구·시·군</p> <p>2. 다른 구·시·군</p> <p>() 시·도</p> <p>() 구·시·군</p> <p>3. 기타()</p> <p>□ □ □ □</p>	<p>라2 그당시에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p> <p>1. 주로 일하였음</p> <p>2. 틈틈이 일하였음</p> <p>3. 구직활동</p> <p>4. 가 사</p> <p>5. 통 학</p> <p>6. 연소·연로</p> <p>7. 심신장애</p> <p>8. 기 타</p> <p>〈질문끝〉</p>	<p>라3 그당시 다니던 직장(일)과 현재의 직장(일)과는 어떻게 됩니까?</p> <p>1. 동 일 함 〈라5로〉</p> <p>2. 다 름</p> <p>3. 그만 두었음</p>	<p>라4 그당시 다니던 직장을 옮긴(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라5 그당시 직장의 주된 산업 활동은 무엇입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 사업체의 주된 활동</p> <p>※ □ □ □</p>	<p>라6 그당시 직장(일)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p> <p>● 말은 일의 종류</p> <p>● 직명 또는 직위</p> <p>※ □ □ □</p>	<p>라7 그당시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p> <p>2. 임 시 5. 자영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 종사자</p>	<p>라8 그당시 직장(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였습니까?</p> <p>1. 1~4인 6. 100~299인</p> <p>2. 5~9인 7. 300~499인</p> <p>3. 10~19인 8. 500~999인</p> <p>4. 20~49인 9. 1000인 이상</p> <p>5. 50~99인</p> <p>〈질문끝〉</p>

	① 가구원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 관계	⑥ 교 육 정 도
인 적 사 항	• 성 명		1. 남 자	세는 나이(), 띠()	1. 미 혼	1. 국민학교 2. 중 학교 3. 고등학교 4. 초대 및 전문대 5. 대 학 6. 대 학 원 이 상 70. 안다녔음
	• 일 련 번 호		2. 여 자	19 년 양 · 음 월 일 생 만 세	2. 유 배우 3. 사 별 4. 이 혼	

	⑦ 활 동 상 태	⑧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⑨ 1주 간의 구 직 여 부	⑩ 취업가능성여부	⑪ 취업의사유무
확 인 사 항	지난 일주간(1986. 11.9~11.15)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일하였음 11. 주로 일하였음 12. 틈틈이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조금도 일하지 않았음 21. 일시휴직 25. 연소연료 22. 구직활동 26. 심신장애 23. 가 사 27. 기 타 24. 통 학 ()	지난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갖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30. 없었음 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병 12. 연가 또는 휴가 13. 노동쟁의 14. 조업중단 20. 기타()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 • 일시적병 • 일기불순 • 자영업준비 •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소집 • 직장 또는 구직결과대기 • 가족의 관혼상제 3. 구해보지 않았음 ()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 2. 없었음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 2. 하지 않겠음 ()

취업자 사항					
가1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직장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가2 무슨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	가3 현재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 1. 상 용 4. 고 용 주 2. 임 시 5. 자 영 자 3. 일 용 6. 무급가족 종 사 자	가4 현재 직장의 조직형태는 무엇 입니까? 1. 개인사업(체) 2. 회 사 3. 기타법인단체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가5 현재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가6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직장 이나 일자리를 구하 였습니까? 1. 친구·친지알선 2. 취직시험 3. 사업체 직접방문 4. 신문광고 5. 직업소개소 6. 자기사업 7. 기타()
가7 지난주 수입을 목 적으로 일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35시간 () 2. 36시간이상 () ※ 일시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1. 1~35」에 ○표할 것	가8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건강때문에 12. 일거리가 없어서 13. 가사, 통학으로 14.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15. 기타()	가9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1.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2.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음 3.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음	가10 다른 직장(일) 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이 적어서 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3. 적성에 맞지 않아서 4. 작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5.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6. 정년이 되어서 7. 기타()		
가11 현재 직장(사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6개월 미만 3. 6~12개월 미만 4. 1~3년미만 5. 3~5년미만 6. 5~10년미만 7. 10~20년미만 8. 20년이상	가12 현재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12개월 미만 5. 12개월 이상 6. 없었음	가13 지난 3년간 (1983. 11. 16~1986. 11. 15) 직장(사업체) 을 옮긴 횟수는 얼 마나 됩니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4. 없음	가14 현재 직장(일) 에 취업하기 전에 직 업훈련 또는 직업교 육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11. 사설학원에서 12.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13. 사업체부설 기관에서 20. 받지 않았음 ()	가15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 이 취업하는데에 유용했습니까? 10. 유용했음 <input type="checkbox"/> 유용하지 않았음 21. 취업기회가 없어서 22. 훈련수준이 맞지 않아서 23. 취업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24. 기타()	가16 지난 1개월 동안 귀하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만원 미만 3. 10~20만원 미만 4. 20~30만원 미만 5. 30~50만원 미만 6. 50~70만원 미만 7. 70~100만원 미만 8. 100만원 이상 9.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 부문종사자 ()

실업자 사항

<p>나1 구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 일</p> <p>2. 틈틈이 하는 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 라3으로</p>	<p>나2 월급여가 적어도 얼마수준이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p> <p>1. 5만원 미만</p> <p>2. 5~10만원 미만</p> <p>3. 10~15만원 미만</p> <p>4. 15~20만원 미만</p> <p>5. 20~30만원 미만</p> <p>6. 30만원 이상</p>	<p>나3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p> <p>1. 친구·친지 알선</p> <p>2. 취직시험</p> <p>3. 사업체 직접방문</p> <p>4. 신문광고를 내거나 찾아봄</p> <p>5. 직업소개소</p> <p>6.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음</p> <p>7. 기타()</p>	<p>나4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p> <p>□ 개월</p> <p>(년 월)</p>	<p>나5 전에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p> <p>1. 있었음</p> <p>2. 없었음 라10으로</p>	<p>나6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였습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_____</p> <p>● 사업체의 주된활동</p> <p>_____</p> <p>※ □ □ □</p>
<p>나7 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p> <p>● 맡은 일의 종류</p> <p>_____</p> <p>● 직명 또는 직위</p> <p>_____</p> <p>※ □ □ □</p>	<p>나8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p> <p>2. 임시 5. 자영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종사자</p>	<p>나9 전에 하였던 일을 왜 그만두었습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나10 취직(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취업기회가 없어서</p> <p>2. 취업정보를 몰라서</p> <p>3.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p> <p>4. 남녀차별때문에</p> <p>5.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6. 기타()</p>	<p>나11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원합니까?</p> <p><input type="checkbox"/> 원함</p> <p>11. 자비로</p> <p>12. 국비로</p> <p>13. 사업체 부담으로</p> <p>20. 원하지 않음.</p>	<p>나12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p> <p>1. 가족 및 친지보조</p> <p>2. 벌어들인 소득으로</p> <p>3. 빚을 얻어서</p> <p>4. 영세민보호</p> <p>5. 재산소득(이자, 집세등)</p> <p>6. 연금</p> <p>7. 기타()</p> <p>라1로</p>

비경제활동인구 사항

<p>다1 원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p> <p>1. 주로 하는 일</p> <p>2. 틈틈이 하는 일</p> <p><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p> <p>3. 자영업</p>	<p>다2 직장 또는 일거리를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생활비를 벌려고</p> <p>2.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p> <p>3. 시간이 남아서</p> <p>4. 보다 나은 경험(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p> <p>5. 기타()</p>	<p>다3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p> <p>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p> <p>3. 자격이 부족하여서</p> <p>4. 교통이 불편하여서</p> <p>5. 기타()</p>	<p>다4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p> <p>1. 구해보았음</p> <p>2. 구해보지 않았음</p> <p>라1로</p>
---	--	---	---

노동력 이동 사항

<p>라1 1년전(1985. 11. 10~1985. 11. 16)에 살던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다른가?</p> <p>1. 같은 구·시·군</p> <p>2. 다른 구·시·군</p> <p>() 시·도</p> <p>() 구·시·군</p> <p>3. 기타()</p> <p>□ □ □ □</p>	<p>라2 그당시에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p> <p>1. 주로 일하였음</p> <p>2. 틈틈이 일하였음</p> <p>3. 구직활동</p> <p>4. 가 사</p> <p>5. 통 학</p> <p>6. 연소·연로</p> <p>7. 심신장애</p> <p>8. 기 타</p> <p>질문끝</p>	<p>라3 그당시 다니던 직장(일)과 현재의 직장(일)과는 어떻게 다른가?</p> <p>1. 동일함 라5로</p> <p>2. 다름</p> <p>3. 그만 두었음</p>	<p>라4 그당시 다니던 직장을 옮긴(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폐업·해고</p> <p>2. 보수(수입)가 적어서</p> <p>3. 사업부진</p> <p>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p> <p>5. 본인 학업 때문에</p> <p>6. 가정사정으로</p> <p>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p> <p>8. 기타()</p>
<p>라5 그당시 직장의 주된 산업 활동은 무엇입니까?</p> <p>● 직장 또는 사업체명</p> <p>_____</p> <p>● 사업체의 주된 활동</p> <p>_____</p> <p>※ □ □ □</p>	<p>라6 그당시 직장(일)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p> <p>● 맡은 일의 종류</p> <p>_____</p> <p>● 직명 또는 직위</p> <p>_____</p> <p>※ □ □ □</p>	<p>라7 그당시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p> <p>1. 상 용 4. 고용주</p> <p>2. 임시 5. 자영자</p> <p>3. 일 용 6. 무급가족종사자</p>	<p>라8 그당시 직장(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였습니까?</p> <p>1. 1~4인 6. 100~299인</p> <p>2. 5~9인 7. 300~499인</p> <p>3. 10~19인 8. 500~999인</p> <p>4. 20~49인 9. 1000인 이상</p> <p>5. 50~99인</p> <p>질문끝</p>

'86고용구조특별조사

조 사 요 령 서

1986. 1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지역		3
4. 조사대상		3
5. 조사시기		3
6. 조사방법		4
7. 조사사항		4
8. 집계 및 공표		4
II. 조사일정과 조사업무		5
1. 조사요원 교육		5
2. 준비조사		5
3. 실지조사		6
4. 조사표류 검토 및 정리		6
5. 조사표류 제출		7
III. 조사요원의 일반적 유의사항		8
IV. 조사대상		9
1. 조사대상 가구		9
2. 조사대상 가구원		10
V. 조사표 기입요령		11
1. 일반적인 유의사항		11
2. 난외사항 기입요령		11
3. 난내사항 기입요령		13

가. 인적사항	14
나. 확인사항	19
다. 취업자 사항	32
라. 실업자 사항	61
마. 비경제활동인구 사항	71
바. 노동력 유동사항	75
Ⅵ. 기타 조사표류 작성 및 제출	82
1. 종합표 기입요령	82
2. 집계표 기입요령	82
3. 조사표 편철 및 기입요령	83
부 록	85
1. 경제활동인구 분류	85
2. 경제활동인구	85
3. 비경제활동인구	86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이 조사는 1983년 1차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고용에 관한 대규모 조사로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역별 고용구조와 산업간의 노동력 유동상태 및 취업자·실업자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하여 장·단기 고용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지역자료의 생산확대방안으로 1차 조사시의 시·도 및 시·군부 지역자료 생산에서 시·도 및 시·군부는 물론 도청소재지시 및 인구 40만 이상 시의 지역자료까지 생산, 지역단위의 노동력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법률 제 2799호)에 의하여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8)로 지정된 법정통계 조사다.

3. 조사지역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4. 조사대상

전국에서 추출된 표본가구(약 140,000 가구)에 상주하는 14세이상 인구(단, 현역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 해외취업자, 외국인은 제외)

5. 조사시기

가. 준비조사기간: 1986.11. 9 ~ 11.10

나. 대상기간 : 1986.11. 9 ~ 11.15

다. 조사기간 : 1986.11.17 ~ 11.26

6. 조사방법

동·읍·면 직원과 보조조사요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7. 조사사항 (항목수)

- 인적사항 (6)
- 확인사항 (5)
- 취업자사항 (16)
- 실업자사항 (12)
- 비경제활동 인구사항 (4)
- 노동력 유동사항 (8)

총 계 : 51개 항목

8. 집계 및 공표

조사 완료된 조사표는 내용검사·부호기입 및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1987. 9.30 일까지 공표한다.

Ⅱ. 조사일정과 조사업무

선정된 조사요원은 다음 일정에 따라 조사대상가구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요원교육 (10월 20일~10월 29일)

- 조사에 필요한 제 서식을 수령하고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2. 준비조사 (11월 9일~11월 10일)

- 담당조사구내의 거처 및 가구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명부를 보완한다.

가. 조사구 요도 수정보완

- 조사구 경계선(적색 및 청색 경계선 모두)내에 신축 또는 누락된 거처를 발견하였을 경우 발견 순서대로 요도상의 해당위치에 그려 넣고 마지막 거처번호에 이어 다음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 철거된 거처는 해당거처를 지우고 결번 처리한다.
- 조사구 경계선(청색 경계선) 수정은 상급기관의 승인후에만 수정할 수 있다.
- 기타 지형지물도 보완하여야 한다.

나. 가구명부수정

- 청색 경계선내의 모든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수정 보완한다.
- 가구의 전·출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조사 실시일에 실재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청색 경계선내에서 거처의 신축 또는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는 가구명부에 추가기입하고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거처내에 가구번호 기입요령은 새로운 가구가 전입하였을 경우로 가구명부 마지막 가구번호에 이어서 일련번호순으로 추가기입하고 조사대상으로 한다.
- 조사대상 거처내의 가구가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가구명부상 비교란에 전출이라 기입하고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사구 요도 청색 경계선내의 빈 거처가 가구명부상의 “조사대상외”에 ○표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사실시일에 가구가 들어와 살고 있으면 “조사대상”에 ○표시하고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구내의 거처 및 가구확인시 인사장, 안내장 및 보조조사표를 배부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3. 실지조사(11월 17일~11월 26일)

- 가구확인 및 가구명부의 보완이 완료되면 조사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고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만약 적합한 응답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가 완료되면 가구명부와 조사표를 상호대조하여 조사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4. 조사표류 검토 및 정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기입누락이나 오기가 없는가 확인한다.
- 기입누락이나 오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조사대상 가구를 재 방문하여 조사 보완한다.
- 연관 항목간에 불일치 사항이 없는가 확인한다.

- 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가 완료되면 종합표를 작성하고 조사표는 표지로 편철한다.

5. 조사표류 제출

- 조사표의 정리와 종합표의 작성이 끝나면 일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제출 검토를 받는다.
 - 1 단계 : 동·읍·면 → 구·시·군
 - 2 단계 : 구·시·군 → 시·도
 - 3 단계 : 시·도 → 중앙
 - 제출조사표류
 - 조사표철
 - 조사구요도
 - 종합표
 - 집계표
 - 보조조사표
- ※ 가구명부는 구·시·군에서 자체보관

Ⅲ. 조사요원의 일반적 유의사항

조사요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가구 방문시 언행을 바로 하여 응답불응 또는 조사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조사요령서의 내용을 철저히 숙독하여 조사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대상가구의 방문은 조사가 용이한 시간을 택하되 너무 이른 시각이나 늦은 시각 또는 식사시간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3. 조사요원은 대상가구원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가구원이 부재시 또는 질문에 응답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시에는 그 가구원의 신상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 또는 가구내의 책임있는 가구원에게 질문 조사할 수 있다.
4. 조사시 먼저 보조조사표의 기입여부를 확인하고 보조조사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보조조사표를 참조 확인하면서 조사표의 내용을 조사 기입한다.
5. 조사결과를 정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 조사하여 보완해야 한다.
6. 조사요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조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사지도 요원(중앙 및 시·도, 구·시·군 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7. 어느 개인이나 사회단체등을 위한 사적인 어떠한 사항도 본 조사와 함께 조사하여서는 안되며 조사결과 알게 된 개인에 관한 조사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 8조규정)

Ⅳ. 조 사 대 상

1. 조사대상가구

조사구내의 거처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는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가구라함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 가구의 정의

가구라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가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일반가구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끼리 생계를 같이하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과 그 가족의 친지,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이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단, 비혈연관계에 있는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일 경우 이들은 별도의 가구로 본다)

○ 비혈연가구

혈연관계를 맺지않은 여러사람이 한데 모여 가구의 형태로 살고 있는 가구(단, 비혈연관계에 있는 가구원의 수가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집단가구로 본다)

○ 단독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예: 독신자 숙소의 개개인)

○ 집단가구

- 기숙사 또는 특수사회 시설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
- 비혈연관계에 있는 가구원의 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가구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 집단가구는 조사에서 제외한다.(단,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내

의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서 별도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외국인 가구는 조사에서 제외한다.(단, 외국인 가구내의 한국인은 별도의 가구로 보아 조사한다)
- 현역군인, 전투경찰, 방위병들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2. 조사대상 가구원

- 1986.11.8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조사대상가구에 상주하는 가구원을 말한다.
- 다만 조사대상가구의 가족이나 가구원중 다음과 같은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4세 미만자
 - 현역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교도소수감자
 - 취업, 취학으로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 해외취업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 요양소, 기도원에 수용된 가족
 - 외국인
- 제외자(현역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 등)였던 자가 조사대상주간(1986.11.9 ~ 11.15)중에 그 신분을 벗어난 경우에는 조사한다.
“예” 군인이었던 자가 1986.11.13일자로 제대하여 조사구역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조사대상가구에 는 없지만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친척방문, 출장, 행사등으로 출타중인 가족
 - 해외출장중인 가족
 -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
 -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의 탑승 승무원인 가족

V.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인 유의사항

-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응답란에 특별히 다음 질문 순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중간의 질문생략 항목은 사선 「\」을 긋는다. 그러나 조사사항 전체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항목을 하나의 사선으로 처리한다.
- 라. 선택형 질문항목은 반드시 해당번호 하나에만 ○표하여야 한다.
- 마. 한 가구에 조사대상자가 4명이 넘을 경우 조사표를 추가하되 추가된 조사표의 표지에는 “관리사항”만 기입하고, 가구원 일련번호는 계속해서 부여한다.
- 바. 조사표는 1부당 4명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실제 한 가구에 조사대상자가 4명미만이거나 5명이상이 되어 조사표가 남는 경우, 남은 조사표는 조사가 모두 끝난후 조사표 표지로 편철할때 떼어 내도록 한다.

2. 난외사항 기입요령

- 가. 행정구역번호
해당 행정구역 번호는 시·도, 구·시·군 부호까지 기입한다. 단, 충남 대전시와 경남 울산시의 경우에는 시 부호를 생략하고 구 부호를 기입한다.

예,

- 충남 대전시 중구 : 3402
- 경남 울산시 중구 : 3801

나. 조사구번호

해당 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다. 거처번호

해당 조사구내의 거처번호(3자리)를 기입하는데 이는 가구 명부상의 거처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 008, 021, 045, ……

라. 가구번호

거처내에 살고 있는 가구에 부여되는 번호로서 한 거처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①주인가구, ②동거가구 순으로 일련번호(3자리)를 기입하되 가구명부상의 가구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 002, 008, 015, 075, ……

마. 가구당 부수

한 가구에서 조사대상 가구원 수가 4인 이하일 경우는 “□부중 □부”로 기입하고, 4인을 초과할 경우 조사표가 추가로 사용되는데 이란은 추가된 조사표를 관리하기 위한 란으로서 예컨대, 조사대상자가 5명인 경우 첫부는 “□부중□부”, 둘째부는 “□부중□부”로 기입한다.

바. 가구원 명부

가구원 명부에는 조사대상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빠짐없이 기입하되 가구주를 우선적으로 기입한다. 단, 비고란은 제외자인 영외거주 군인, 방위병 등을 표시한다.

사. 가구원 상황

- 총가구원 수는 가구원 명부상의 가구원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제외자: 14세미만과 14세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대상가구원: 14세이상 가구원중 제외자(영외거주군인, 방위병)

를 뺀 나머지 가구원을 말한다.

- 취업자, 실업자: 대상가구의 조사결과 취업자, 실업자를 남, 여, 계, 별로 기입한다. 한 가구의 조사표가 2부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첫 조사표 표지에 기입한다.

아. 가구 구분

조사대상가구를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한다.

(농가의 정의)

- 가구주의 생업이 농업인 경우 농가로 본다.
 - 가구주라 함은 가구원중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를 말한다.
 - 생업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수입에 의한 구분이 어려울 때는 노동의 투입량, 설비의 규모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가구도 농가로 분류한다.

자. 조사요원 기입사항

조사구의 행정구역(시·도), 조사요원 성명 및 응답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차. 조사요원 의견란

이란은 조사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기입하는 난으로 차기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3. 난내사항 기입요령

- 모든 조사대상자는 먼저 인적사항과 확인사항을 질문한 다음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어느 사항을 조사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모든 조사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사항”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사항중의 어느 하나(단, 확인사항 ⑪ 항의 “2. 하지 않겠음”에 해당자는 제외)와 노동력 유동사항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 대상가구가 만 14세미만과 영외거주 현역군인, 방위병등의 제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난외사항만 작성한다.

가. 인적사항

(1) ① 가구원 성명

- 성명은 조사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한글로 바르게 기입한다.
- “일련번호”는 한 가구의 조사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련번호의 최종숫자(번호)는 한 가구내에 조사대상자가 모두 몇명인가를 나타내준다.
- 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를 다음의 “가구원 조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따라서 일련번호도 조사되는 순서에 의해 “01”부터 부여해야 한다.

(가구원의 조사순위)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미혼형제(자매)
5. 부모(장인, 장모), 조부모
6. 기혼자녀, 기혼형제(자매)
7. 기타 친척
8. 동거인

(2) ② 가구주와의 관계

- 조사대상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항목으로 조사대상자의 확인과 고용구조 분석의 연관계표에 사용하고자 파악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본 항목에서는 가구주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의 “가구주의 정의”를 잘 알아야 한다.

(가구주의 정의)

가구주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 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호주나 세대주라 하더라도 가구주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본 항은 다음의 “가구원의 분류번호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구주가 군인, 방위병으로 제외자)를 제외하고는 가구주가 제일 먼저 조사되어야 한다.
- 형제자매나 손자손녀가 많은 경우에는 연령순에 의하여 조사한다.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동거인으로 기입한다.
- 가구주이외의 가구원에 대하여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부 적 합	적 합
아 들	장남, 차남, 삼남
딸	장녀, 차녀, 삼녀
손 자	장남의 장남, 차남의 삼남
손 녀	장남의 차녀, 차남의 장녀
며 느 리	장남의 처, 차남의 처

○ 가구원의 분류번호

가구원의 분류번호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및 분류번호

분류 번호	가 구 주 와 의 관 계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미혼자녀
4	미혼형제(자매)
5	부모(장인, 장모포함)
6	조부모
7	기혼자녀, 그가족
8	기혼형제자매, 그가족
9	기타 친척
0	동거인

(3) ③ 성 별

해당란에 ○표 한다.

(4) ④ 연 령

- 연령은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실제 나이로 조사하여야 한다.
- 연령을 조사하게 되면 응답자 대다수가 자기 가구원의 세는 나이와 생일만을 알고 있을 뿐 실제 태어난 연도는 잘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는나이와 “띠”까지 물어서 실제 태어난 출생년도를 정확히 기입하고 양력(또는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만나이를 환산 기입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 기준일시 : 조사대상 주간의 첫날 0시 기준
- 대상자의 양력생일이 조사대상 주간 첫날보다 빠른 경우

(조사년도 - 출생년도 = 만나이)

예 : 1986 년 11 월 조사

조사대상주간 첫째일 : 1986.11.9

대상자의 생년월일 : 1949.11.8

1986 - 1949 = 37 (만나이)

- 대상자의 양력생일이 조사대상주간 첫날과 동일하거나 늦은 경우

(조사년도 - 출생년도) - 1 = 만나이

예 : 1986 년 11 월 조사

조사대상주간 첫째일 : 1986.11.9

대상자의 생년월일 : 1949.11.10

(1986 - 1949) - 1 = 36 (만나이)

- 대상자의 양력 생일이 1900년 이전의 경우, 1900년으로 기입하고, 만나이라도 1900년부터 계산한다.

(5) ⑤ 배우관계

- 호적 또는 주민등록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말한다.
- 미혼은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유배우는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내연의 관계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중혼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 사별이란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기입한다.
특히, 해방전 또는 한국동란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망으로 간주한다.
- 이혼이란 혼인을 했던 사람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여기에 포함한다.
- 배우관계는 최종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혼한 후 다시 재혼하였으면 유배우에 해당하고, 재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홀로 살고 있는 경우 사별에 해당된다.
또한 배우관계는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6) ⑥ 교육정도

- 이 항목은 교육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두곳에 ○표 하여야 한다.
단,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70 안다녔음”의 한 곳에만 ○표 한다.
- 학력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재학중인 사람에게 해당되며 기능훈련 또는 직업훈련 학원, 상급학교 진학을 위

- 한 입시학원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민학교는 국민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으로 구분되는 바, 고등공민학교는 중학에 해당한다.
 - 구제 5년제 중학은 현재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나. 확인사항

(7) ⑦ 활동상태

지난 일주간 (1986.11.9 ~ 11.15) 에 조금이라도 수업을 목적으로 일하였습니까?

이 항목은 지난 1주간 (86.11.9 ~ 11.15) 에 조사 대상자가 활동한 상태를 확인하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된 항목인데 ‘확인사항’ 난의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⑦⑧항목은 취업자로 분류하기 위한 항목이며 ⑨⑩항목은 실업자를 ⑪항목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구직단념자를 파악 분류하기 위한 항목이다.

‘확인사항’ 의 각 항목을 조사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조사요원의 잘못 판단으로 취업자가 과소, 실업자는 과대 조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는 무조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데, 비록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틈틈히 부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으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졸업후에 직장없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모두 실업자가 아니라 이들중 취업의사를 갖고 조사주간에 구체적인 구직활동(⑨ 1주간의 구직여부)을 한 사람만이 실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요원은 일반적인 상식기준으로 조사하지 말고 조사 실시전에 조사요령서를 철저히 숙지하여 위와같은 착오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가) □ 일하였음

11. 주로 일하였음

12. 틈틈이 일하였음.

- 임금이나 다른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과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활동을 말하며 주로 일에만 종사한 사람은 “11. 주로 일하였음”에 ○표 하고, 가사나 통학등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한 경우는 “12. 틈틈이 일하였음”에 ○표 한다.

※ “일하였음”에 해당되는 활동-취업자로 분류

- 일당이나 월급등 봉급을 받고 일하는것 이외에도 품앗이, 새경, 숙식제공등 현금대신 현물을 받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것도 포함한다.
- 음식점, 주점등에서 팁을 받고 접대하는 사람도 여기에 분류한다.
- 비임금 근로에 속하는 사람중 조사대상 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은 올리지 못했으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계속해서 시간을 보낸 경우도 포함한다. (적자 여부 불문)
-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파종, 비료살포, 살균, 어획활동 등과 같은 실질적인 농·어업 활동은 하지 못하고, 농기구, 그물손질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무급가족 종사자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정상근로 시

간의 1/3 이상(주당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한 것을 말한다. 이는 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하여 혈연관계를 갖는 사람의 활동에 한 한다.

- 주간(주간)에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 틈틈이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한 경우 또는 주간(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일하였음'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 일하였음”(“11. 주로 일하였음”이나 “12. 틈틈이 일하였음”)에 분류된 사람은 취업자로서 다른 항(⑧-⑪)은 사선(≡)을 긋고 「가1 산업」부터 질문한다.

※ “일하였음”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 주당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 종사자
- 임금근로자인 가족을 도와준 활동 즉, 직장에 다니는 남편의 일을 도와준 부인의 활동
-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집에서 밥을 짓는 활동. 즉, 직접 농사일을 도운 것이 아닌 활동
- 자선기관에서의 무보수로 하는 봉사활동
- 투자활동에 국한하고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활동
-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
- 법률에 의한 강제 노역

이와같은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는 “일하였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 취업자가 아니므로 “□ 조금도 일하지 않았음”에 조사되어야 한다.

(나) □ 조금도 일하지 않았음

21. 일시휴직

조사대상 주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휴가, 노동쟁의, 기계고장, 원료부족 및 일기불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떠나있었던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동쟁의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장에 복귀할 날짜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직장의 정의)

여기에서 말하는 직장은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계절적으로 일하는 경우 그 활동이 현재(조사대상 기간에) 해당 계절이면 직장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무급가족 종사자와, 필요할 때마다 호출에 의하여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예, 파출부, 예비운전자 등)은 직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직장으로 보는 경우

-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정기적으로 돕는 소매활동
- 가정에 고용되어 봉사하는 가사 서어비스 활동
- 해당 계절동안 취업하고 있는 계절적 취업자
예, 스키시즌에 잠시 일하고 있는 스키강사
- 방학을 맞이한 학교 교원
- 교육훈련, 여행으로 자기의 직장에서 떠나 있으나 급료를 받는 사람
- 일시 군사훈련(민방위, 예비군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에서 떠나 있는 사람
- 신문, 화장품, 요구르트, 우유배달 외판원

○ 직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고 호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에, 파출부
- 비수기에 있는 계절적 취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로서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
- 복귀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

(자기사업의 정의)

다음의 경우는 자기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자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상당한 가치를 지닌 기계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단, 전지가위, 수동식 잔디깎기 등 수공구는 기계장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계장비는 보잘것 없지만 공적으로 광고를 한 경우는 자기사업에 포함한다.
- 사무실, 상점 또는 기타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전화 광고란에 게재
 - 광고물 설치
 - 일반 대중에게 광고전단 살포
- 자기사업으로 보는 경우
 -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내 수공업을 하는 경우
 - 자기 장비로 농사짓는 경우
 - 광고를 내고 개인 교수하는 피아노 교수의 경우
 - 전화 광고란에 등재한 소규모 청부업자
- 자기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남의 가정에서 행하는 가사 서어비스 활동(임금 근로로 간주)

- 사업장비 없이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단순 노동을 제공하고 샅을 받는 사람
- 토수, 목수, 합석공이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행하는 소규모의 수리활동

22. 구직활동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조사대상 주간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공·사(公·私) 직업소개소에 등록
- 사업주의 면담 또는 전화상담
- 광고계재, 광고에 응모, 구직광고란 찾아봄
- 취직시험을 위한 원서접수 및 응시
- 무보수이지만 취업을 전제로 사업체가 실시하는 연습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자
- 취업 알선기관에 취업의뢰한 경우
-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업장, 농장, 건설공사장 등을 방문
- 친구, 친지에 알선 의뢰

23. 가사

- 조사대상 주간에 자기 가정에서 가사를 수행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주로 여자가 해당되지만 남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여기에 분류되기 위해서 조리, 세탁, 청소, 육아등 실질적인 육체노동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여기에 분류되는 사람은 조사대상 주간에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따라서 한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24. 통학

- 조사대상 주간에 공사립 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 학원(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제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방학중에 있거나 일시적인 병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 ‘여름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의 평소 주된 활동에 분류하여야 한다.
- 간호학생이 조사대상 주간에, 학업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간호업무를 수행한 간호학생은 “□ 일하였음”에 V표시하고 “1. 주로 일하였음”이나 “2. 틈틈이 일하였음”에 분류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자가 특정 프로젝트를 얻어 연구하고 용역비를 받았을지라도 통학으로 분류한다.

25. 연소, 연로

조사대상 주간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수익있는 일, 구직활동 또는 가사일도 하지 않고 소일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기적인 질병 또는 노년기 증상에 의한 심한 지체부자유자는 여기에 분류하지 말고, “26. 심신장애”에 분류하여야 한다.

26. 심신장애(취업불능)

- 장기적인 질환, 정신병 또는 신체불구 때문에 어떠한 종

류의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신체불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경
 미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고, 수익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취업불능자는 포함한다.

-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 예상되는 일시
 적 병 또는 마비는 제외한다.
-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장기적인 심한 질병 때문에 보
 호자가 필요한 사람, 자기 침대에서 전혀 떠날 수 없
 는 사람, 정신박약아로 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일
 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에 분류한다.

27. 기 타

조사대상 주간에 주된 활동이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여기에 ○표시 하고 활동유형을 간단
 히 기록한다.

- 정년퇴직자
 과거의 직장에서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
- 자원봉사
 임금이나 급료없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 구호사업
 임금이나 급료없이 빈민, 재해자를 돕는 사람
- 무위도식
 특정한 일을 하지 않고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이나 유
 산, 가족등의 경제적인 보조에 의해 살고 지내는 자

(8) ㉔ 일시 휴직여부 및 이유

지난 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갖고
 있었습니까?

본 항목의 조사대상은 대부분「⑦ 활동상태」에서 “21.일시휴직”에 해당된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누락된 사람과 잘못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유형별로 찾아내 취업자인가를 완전히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조사대상 주간에 직장 또는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있었음”에 V표시한 후, 다시 왜 지난주에 일하지 않았는지를 물어 해당 번호에 ○표 하고 일시 휴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⑨-⑪항에 사선을 긋고 「가 1 취업시간」을 묻는다. 한편 조사대상 주간에 직장 또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었는지의 질문에 “없었음”이라 응답한 경우는 일시 휴직자가 될 수 없으므로 ⑨항 이하를 질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일시적 병

자기의 병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것도 포함한다.

12. 연가 또는 휴가

휴가, 경·조사, 예비군훈련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 면허정지, 일시적 구류, 운행정지 등의 법적 처분을 받아 조사대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30일 이내에 현 직장에 복귀할 것이 확실한 사람은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 조사한다.

13. 노동쟁의

사업체에서의 노동쟁의(파업에 가담한 사람 뿐 아니라 파

업 때문에)로 출근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14. 조업중단

일기불순, 기계고장, 원료부족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일정한 직장 없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날품팔이 노동자(일고자)가 날씨가 나빠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였을 때 즉 일을 못하였을 때 이를 일시 휴직자로 간주 여기에 분류하는 착오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직장 또는 사업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시 휴직자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5. 기 타

위 4개 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들, 예컨대 기업의 경영 사정으로 인해 대기 발령을 받았으나 재발령이 희박한 경우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업자로서의 일시휴직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⑨항 이하를 계속 질문하여야 한다.

(주의) : 무급가족 종사자는 일시 휴직자가 될 수 없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것도 아니고 또한 자가 사업체도 없으므로 일시 휴직이 성립될 수 없고 단지 조사대상 주간중 활동상태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9) ⑨ 1주간의 구직여부

지난 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지난 주에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과, 특별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어 실업자로 분류하고자 설정된 항목이다.

1. 구해 보았음

여기에서 구직활동의 개념은 「⑦ 활동상태」의 “22. 구직활동”과 동일하다. 조사대상 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과거에 구직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사대상 주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

조사대상 주간에 특별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일시적 병
자기의 병이나 가족의 병 또는 병 간호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것도 포함한다.
- 일기불순
날씨가 나빠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자영업 준비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고 자금을 준비하는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예비군 또는 민방위 소집훈련
조사대상 주간중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예비군 또는 민방위 소집훈련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

우가 해당된다.

- 직장 또는 구직결과 대기
취직시험에 합격 되었지만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구직결과 대기는 구직활동을 한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경우 우가 해당된다.
- 가족의 관혼상제
가족의 관혼상제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3. 구해보지 않았음

조사대상 주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전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항에 ○표 하고 “⑩ 취업가능성 여부”항은 사선을 긋고 “⑪ 취업의사 유무”항을 질문한다.

⑩ 취업가능성 여부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둘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셋째, 찾고자 하는일에 능력을 갖추었어도, 일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졌을때 즉시 취업이 가능하여야 실업자로 분류되는데 이 항목은 이러한 취업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설정된 항목이다. 따라서 가사, 통학 등 개인 사정 때문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된다.

1. 있었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였던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여기에는 ⑨항 「1주간의 구직여부」의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도 포함된다.

2. 없었음

조사대상 주간에 찾고 있는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통학 등에 전념하기 때문에 즉시 취업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졸업예정 학생이 졸업후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는 학업때문에 취업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해당된다.

(주의) : “ 1. 있었음”에 해당된 자는 실업자로서 「㉠」항에 사전(☐)을 짓고 「나1」항을 질문한다.

(11) ㉠ 취업의사 유무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본항은 조사대상 주간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현재 취업하기를 원하는지의 여부와 더 나아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도 과거 구직경험이 있는 구직 단념자를 골라 내기 위한 항목이다.

1. 하겠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도 지금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을 경우에 일을 하겠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2. 하지 않겠음

지금 알맞은 직장이거나 일이 주어지더라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 (주의) : 1. ㉠항의 “ 1. 구해 보았음 ”에 해당되는 사람이 ㉡항 “ 2. 없었음 ”에 해당된 사람은 ㉢항을 질문하지 않고 조사요원이 직접 “ 1 하겠음 ”에 ○표 한다.
2. “ 1. 하겠음 ”에 해당되는 사람은 「 다 1 」항을, “ 2. 하지 않겠음 ”에 해당되는 사람은 「 라 1 」항부터 계속 질문한다.

다. 취업자 사항

조사대상 주간('86.11.9~'86.11.15)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18시간 미만 무급가족 종사자 제외)와 일시 휴직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항목으로서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 : 본 취업자 사항의 각 항목에서 나오는 “ 현 ”, “ 현재 ” 라는 질문 용어는 조사대상 기간이 '86.11.9~'86.11.15이기 때문에 시제상으로는 어색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는 취업자 대부분이 조사실시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자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1) **가1 산업**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정 의

-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기간에 취업했던 직장(일)의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말한다.
- 유의해야 할 점은, 조사대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취업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활동내용, 즉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그사람이 하는 일을 기입한다.

예, 남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 「파출부」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 → 「지게꾼」

○ 기입방법

직장 또는 사업체명

직장 또는 사업체명을 정확히 기입한다. 사업체명을 약해서 기입해서는 안된다.

• 자영업

사업체, 점포 등의 이름이 있는 경우 사업체명, 점포명을 기입한다. 만일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자기사업”, “가족사업”이라고 기입한다.

• 임금근로자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의 이름을 기입한다. 공무원인

경우 구체적으로 근무처를 기입한다.

예 : 국세청에 근무하는 경우

국세청 (○) 재무부 (×)

만일 직장명칭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이름을 기입한다. 또한 조사대상 주간에 여러 곳에서 일한 사람 (파출부, 잡역부등)과 매일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 (미장이, 굴뚝청소원, 유리창 닦기 등)은 일한 곳을 기입한다.

단, 이러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통상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예 : 파 출 부 - 남의 가정에서

미 장 이 - 남의 집에서 또는 주택 신축장에서

굴뚝청소원 - 남의 공장에서

창유리닦기 - 남의 건물에서

구 두 닦 기 - 길거리에서

지 게 꾀 - 시장에서, 역앞에서

잡 역 부 - 건축장에서, 남의 공장에서

사업체의 주된 활동

조사대상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입한다. 사업체의 이름을 반복해서 기입해서는 안된다.

- 사업체의 총괄적 및 전문적 기능 명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 기능을 자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즉, 상업인 경우 도매, 소매 구분은 물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명을 동시에 나타내야 한다.

예 : 석탄광업, 연필제조업, 서적도매, 도로건설, 신발수선, 식료품도매, 미장원, 탁구장, 연탄소매, 연탄제조

· 보충질문방법

만일 산업분류가 불가능한 응답을 하는 경우는 보충 질문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금속가구회사에 다닌다”고 한 경우 “그 회사는 금속가구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단지 금속가구를 팔고 있는 회사입니까?”라고 보충질문을 하여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응답자로부터 알아내야 한다.

만일,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주로 개인이나 가정에 물건을 파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나 업자에게 파는지요?”라고 보충질문하여 전자인 경우 소매, 후자인 경우 도매로 기입한다.

특히 가구의 경우는 만든 재료에 따라 산업이 달라지므로 금속, 목재, 플라스틱, 기타 재료를 반드시 파악 상품앞에 붙여 기입한다.

· 정부기관 근무자

정부기관은 대부분 구체적인 기관명만으로도 산업을 구분할 수 있으나, 현업부서는 행정부서와는 달리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산업이 다양하므로 주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 : 전 매 청 - 담배제조(홍삼제조)

철 도 청 - 철도운수

전 매 서 - 담배도매

철도공작장 - 철도차량 수선

구청수도사업소 - 수도사업

기 상 대 - 기상관측

우 체 국 - 우편사무

- 여러가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어떤 사업체에서 2가지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다. 즉, 동일 장소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기입한다.
예 : 양조장에서 잔술을 파는데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 주점업이 아닌 양조업(술제조업)으로 분류.
그 이유는 잔술을 파는 것은 양조장의 주된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제조회사 영업소
제조회사의 본사나 공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영업소는 판매하는 형태에 따라 도매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 기입한다.
- 가내공업
자기사업을 자기 집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비록 가정에서 행하여지더라도 사업체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기입한다.
예 : 한복제조, 나무가구제조, 물리치료 등
단, 제조회사의 하청업자가 가정주부에게 제품(봉제완구, 단추달기, 세탁 부분 잇기등)의 조립을 재하청하여 그 일이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 자기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도 제조회사의 주된 활동을 기입해야 한다.
- 가사 종사자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가사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가사서어비스”라고 기입한다.

만일 하는 일이 가사 서비스 아닌 다른 산업 활동과 연관된 경우는 고용주의 산업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예 : 개인병원 (집에서 경영)의 청소원은 “개인병원”과 “의료”라고 기입한다.

(주의) 본 항목 하단의 ※ □□□란은 산업분류기호 기입란으로서 조사요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산업 항목 기입예

구 분	부 적 합	적 합
1) 주된사업내용 2) 직장사업체이름	음료판매 한국야구르트	야구르트소매 한국야구르트 수원대리점
1) 2)	염 색 동양염공	섬유염색 동양염공주식회사
1) 2)	제 조 원 상원실업	섬유제조업 상원실업주식회사
1) 2)	전자제품 부산 프리덕손	전자제품소매 부산 프리덕손
1) 2)	건설 경제건설주식회사	토목건설 경제건설주식회사
1) 2)	대리점 대한항공주식회사	여행사대리점 대한항공주식회사 구로대리점
1) 2)	건축자재생산 조일공업주식회사	건축자재 알루미늄샷시생산 조일공업주식회사
1) 2)	수선업 시장에서	신발수선업 동부시장

구 분	부 적 합	적 합
1)	상자제조	나무상자 제조
2)	유일산업	유일산업주식회사
1)	광업	석탄광업
2)	한일광업주식회사	한일광업주식회사

(2) **가2 직 업**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정 의

직업이란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실제로 하고있는 일의 내용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임무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말한다.

○ 질문방법

먼저 말은 일의 종류를 묻고 직명 또는 직위를 묻는다. 여기서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은 일의 종류가 되지만, 사람들이 과장, 공장장, 상무등 직명이나 직위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업을 직명이나 직위로 판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말은일과 함께 직명, 직위를 기입하여야 한다. 직명이나 직위는 종종 직업분류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예를들면, 상무·사장·부사장·감사와 같은 직위 또는 직명은 관리자를 의미하고 있다.

말은 일의 종류

많은 응답자가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를들면,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회사원” “공무원”, “상업” 등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회사원, 공무원은 직업이라기 보다는 직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서 이 범주에 속하는 무수한 직업군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상업”이라는 것은 직업이 아닌 산업을 말하나 그것도 도매·소매·음식업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산업도 아니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직업이란 말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말은일(하고 있는일)을 물어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직명 또는 직위

과장·계장·실장·전무·상무·공장장등 직명, 직위는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감독을 위한 책임의 정도, 수행할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구분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명 또는 직위는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명확히 하고 전문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주의) 본란 하단의 ※ □□□ 란은 직업분류기호 기입난으로서 조사요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직업항목기입예

구분	부적합	적합
1) 말은일의 종류	분석	시멘트 분석
2) 직위 또는 직명	계장	분석계장
1)	공무원	경리사무
2)	계장	경리계장
1)	회사원	보험사무
2)	사원	사원
1)	사무원	병원안내
2)	계원	계원
1)	관리	교회관리
2)	관리인	관리인
1)	전기과	전기교장수리
2)	기사	기사
1)	의사	내과의사
2)	의사	의사
1)	단추	단추달기
2)	종업원	종업원
1)	판매	의약품매
2)	사원	사원
1)	싱크대	싱크대소매
2)	종업원	종업원

○ 청소년의 직업

전문적·기술적 또는 숙련 직업은 청소년에게는 특수한 훈련이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은 견습공인지 또는 보조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낮설은 직업
조사 도중에 흔히 이상한 직업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굴신공이나 절삭공등 평소 잘 듣지 못한 직업을 응답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세히 물어 보충 설명내용을 기록명시 하여야 한다.

(3) **가3 종사상의 지위**

현재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정 의
 - 이 항목도 전항의 산업, 직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산업, 직업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를 말한다.
 - 먼저 임금근로자인가 비임금근로자인가 구분하여야 한다.

○ 분 류

□. 임금근로자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업, 가구등에서 일하고 그 댓가로 봉급·임금·구전·팁·삿 또는 현물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임금을 받고 사회복지센터, 교회, 조합, 기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1. 상용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업체의 정규 직원을 말한다. 비록 몇년을 동일 사업체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 여기에 분류해서는 안된다. 즉,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기업의 상근 이사들도 모두 여기에 분류한다.

2. 일 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미만인 사람으로서 상용 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이 약한 사람을 말한다.

“예”, 숙식을 제공받는 가정부 또는 아이보는 사람

3. 일 용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사람 또는 매일매일 또는 이곳저곳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일당 또는 품삯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비임금 근로자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정규적인 보수없이 일하고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법인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은 임금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사장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 확인하여 개인기업의 사장일 경우 대부분 자영자가 되겠으나 만일 봉급을 받을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고용주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록 자기 가족만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있다면 그 가족은 유급고용원이므로 사업주는 고용주가 된다.

5. 자영자

자기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 속한다. 이때의 가족은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주고(일을 하고)있는 경우를 말한다.

6. 무급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없이 자기 가족(동일 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적어도 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일한 자(주당 18시간이상)를 말한다. 따라서 혈연관계에 있으면서,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자와 같은 가구내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 분류상의 주의

○ 일용으로 분류하는 경우

• 가사 종사자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영자라 할지라도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있거나 개인 가정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공구로 소규모 수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일용으로 분류한다.

예 : 숙식을 제공받지 않는 가정부(피출부포함), 아이보리는 사람 또는 떠돌아 다니면서 가정을 상대로 우산을 수리하거나 석유콘로를 수리하는 우산수리공, 석유콘로 수리공등

• 단순 노무자

비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을 수행하는 자영자라 할지

라도 하는 일이 단순 작업에 불과하고 작업 대상처가 일정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경우에는 일용으로 분류한다.

예 : 굴뚝청소부, 지게꾼, 농마주이

○ 행사·노점상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행사이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없이 길거리나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예 : 메리야쓰행사, 시장의 순대장사, 노점상등.

○ 법인기업의 임직원

법인기업의 특정 임원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그 회사가 그 사람의 소유라 할지라도 임금 근로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 동업자

두사람 이상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업자도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분류한다.

○ 현물급여

방·식사·의복등 현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로 간주하여 분류한다.

○ 가내작업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일한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일용으로 분류하고, 개인이 가정에서 직접 행하는 경우는 가내수공업으로 보아 자영업주로 분류한다.

○ 외판원

외판원에는 회사에서 봉급을(일부나마) 받는 경우와 봉급을 전혀 받지 않고,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급

또는 단가제의 경우가 있다. 어느 것이든 모두 임금근로자로 간주하되 회사에서 급료를 받는 외판원은 고용계약에 따라 분류하고, 단가제 외판원은 일용으로 처리한다.

○ 성직자

승려·목사·신부·회교승등 성직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한다. 단, 교회나 사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곳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자는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 하숙집 주인

가정에서 하숙을 치는 사람은 자영업주로 분류한다.

(4) **가4 조직형태**

현 직장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이 항목은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개인 사업(체)

법인격이 없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을 말하며, 법인격을 갖지 않은 2인이상의 공동경영 사업(체)도 여기에 속한다.

(주의) 「가3」에서 “5. 자영자 6.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된 사람은 조사요원이 직접 여기에 ○표 한다.

2. 회 사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3. 기타 법인단체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 중 회사이외의 사업체를 말하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비법인단체인 학회, 문화단체, 친목회, 동창회, 종친회등도 여기에 포함한다.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행정관서를 말하고,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을 의미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조합과 국공립의 학교, 도서관, 병원 및 특수 사회시설을 말한다.

○ 공공기관

국가와 지방의 행정관서

○ 공공단체

(가)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명시된 다음 기관을 말한다.

- | | |
|--------------|------------------|
| 1. 한국가스공사 | 2. 한국산업은행 |
| 3. 중소기업은행 | 4. 국민은행 |
| 5. 한국주택은행 | 6. 한국조폐공사 |
| 7. 한국증권거래소 | 8. 대한석탄공사 |
| 9. 한국전력공사 | 10.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
| 11. 대한무역진흥공사 | 12. 대한광업진흥공사 |
| 13. 농어촌개발공사 | 14. 농업진흥공사 |
| 15. 대한주택공사 | 16. 산업기지개발공사 |
| 17. 한국도로공사 | 18.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 19. 한국관광공사 | 20. 한국방송공사 |

- 21. 한국토지개발공사 22. 한국해외개발공사
- 23. 근로복지공사 24. 한국석유개발공사
- 25. 한국전기통신공사

(내) 정부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을 교부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국방과학연구소 2. 국방관리연구소
- 3. 국방품질연구소 4. 국토개발원
- 5. 한국개발연구소 6. 한국교육개발원
- 7. 한국과학기술원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9.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0. 한국인삼연초연구원
- 11.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소 12. 한국기계연구소
- 13. 한국전자기술연구소 14. 한국어업기술연구소
- 15.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6. 한국에너지연구소
- 17. 한국전기통신연구소 18. 한국표준연구소
- 19.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 해양연구소
- 21. 남북평화통일연구소 22. 한국과학재단
- 23. 에너지관리공단 24.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 25. 중소기업관리공단 26. 국제공항관리공단
- 27. 교통안전진흥공단 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29. 의료보험관리공단 30. 성업공사
- 31. 대한결핵협회 32. 대한나협회
- 33. 한국어선협회 34. 사회정화국민운동협의회
- 35. 경쟁보호회 36. 민족통일협의회
- 37. 새마을운동중앙본부 38. 세계반공연맹사무국
- 39. 대한체육회 40.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 41.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42.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등

(4) 기타 공공단체

- | | |
|-------------|--------------|
| 1. 대한적십자사 |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 3. 한국반공연맹 | 4. 재향군인회 |
| 5. 염업조합 | 6. 인삼조합 |
| 7. 토지개량조합 | 8. 산림조합 |
| 9. 중소기업협동조합 | 10. 농업협동조합 |
| 11. 수출조합 | 12. 수산업협동조합 |
| 13. 한국해운조합 | 14. 염연초생산조합 |
1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등 이외에도 상당수 있으므로 현지 조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가5 사업체 종업원 규모**

현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업원 규모는 사업체를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으로 구분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고 또한 조사대상자의 고용상태를 분석하는데도 간접적으로 필요한 중요 질문항목이다.

○ 기입방법

- 개인사업체의 경우 종업원수는 주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가정을 상대로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품삯이나 임금을 받기때문에 일용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종업원으로 파악한다. 즉,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정부, 정원사는 그 가정의 주인이나 식구를 종업원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6) **가6 취업경로**

주로 어떤경로를 통하여 현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였습니까?

현재의 직장이나 일에 종사하게된 취업경로를 물어 주된 것 하나만 골라 해당사항에 ○표 한다.

조사요원은 조사표에 기재된 응답항목을 응답자에게 읽어 주지 않고 취업경로를 물어야 한다.

1. 친구, 친지 알선

친구나 친지의 알선을 통하여 취직된 경우.

2. 취직시험

취직시험에 합격되어 취직된 경우.

3. 사업체 직접방문

공사장, 건설현장, 점포등으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취직된 경우.

4. 신문 광고

신문에 구직광고를 내거나 신문광고 구인란을 찾아보고 취직된 경우.

5. 직업소개소

공·사를 불문하고 허가를 얻어 직업알선을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취직된 경우.

6. 자기사업

현재 사업을 자기가 시작한 경우를 말하며 무급가족종사

자도 여기에 포함한다.

7. 기 타

상기 열거한 경로이외의 취업경로가 있으면 여기에 ○표하고 간단하게 그 경로를 기입한다.

(7) 가7 취업시간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시간은 모두 몇시간입니까?

조사대상 주간증액 실제 일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실제 일한 시간이란 자기 직분을 다하기 위해 보낸 시간을 말하며 따라서 점심이나 개인적인 일로 일에서 떠난 시간은 제외된다.

- 임금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일한 시간을 포함한다.

예 : 교수의 강의준비를 위한 집에서의 작업

- 비임금근로자는 자기사업 또는 가족사업을 위하여 보낸 시간을 말하며, 여기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어도 거래를 위해 보낸 시간도 포함한다.
- 시간기록
 - 조사대상기간중 실제 일한 시간을 기입하는데, 30분 이상은 한시간으로 계산한다.
 - 조사하기전에 배부한 보조조사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대상 주간증 매일매일의 일한 시간을 합쳐 기입한다.
 -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있는 경우 또는 두가지 이상 일을 한 경우 각각에 보낸 시간을 모두 합쳐 기록한다.

- 일시 휴직자(확인사항 ⑧항의 11-14에 해당되는 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업시간이 없으므로 조사요원이 직접 ○ ○ ○ 을 기입한다.

※ 조사요원 주의사항

- 조사대상주간중 18시간미만 근로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로 볼수 없으므로 취업자에 관련된 질문항목은 사선()을 긋고, 확인사항「⑨ 1주간의구직여부」항목부터 질문조사하여야 한다.
- 36시간 이상 취업자와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구분하여 36시간 미만자는 “ 1. 1~35시간 ”에, 36시간 이상자는 “ 2. 36시간이상 ”에 ○표한다.
- 일시 휴직자는 일단 “ 1. 1 ~ 35시간 ”에 ○표하고 「가8」항 부터 질문한다.
- 36시간이상 일한자 (“ 2. 36시간 이상 ”에 ○표된자)는 「가8」항을 사선() 하고 「가9」항부터 질문한다.

(8) **가8 36시간미만 취업이유**

평소에도 1주간에 36시간미만 일 합니까?

- 조사대상주간에 36시간미만 일한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주간 이전의 평소 취업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평소 취업시간이란 조사대상주간 이전의 1개월간에 평균하여 근로하였던 주당 취업시간을 말한다.
- 여러가지 일을 하는 사람
여러가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합쳐 36시간이상 일하는지를 확인한다.
-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
평소 작업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거리에 따라 변

하는 사람은 1년중 대부분의 주간에 일한 시간을 물어 판단한다.

-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
조사대상주간중에 처음으로 또는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의 주간 예상 시간을 물어 판단한다.
- 일이 끝나는 사람
조사대상주간에 하던 일이 끝난 사람은 과거 평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전직이 끝나고 새로운 직업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의 경우는 위의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가) □ 그러함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한 사람에게는 □안에 V 표시하고 “왜 평소 1주간에 36시간미만 밖에 일하지 않습니까?”를 물어 해당사항에 ○표시 한다.

11. 건강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때문에 평소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

12.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더 많이 원하나 일거리가 없어서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계약 시간이 주당 36시간미만이지만 이 일자리 밖에 없어서 더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13. 가사·통학으로

가사나 통학으로 틈틈이 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즉 가사를 돌보아야 할 책임,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 때문에 시간제 근무만 하는 경우.

14.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하고있는 시간에 만족하고 더 이상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

15. 기 타

위에 열거한 이유 이외의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드시 그 사유를 간단히 기록하여야 한다. 단, 비행사나 기내 서비스 종사자들과 같이 주간 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인 경우는 “ 14.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에 포함한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이 주당 36시간미만이라도 본인이 더 원하는 경우와 일거리가 경기 후퇴로 상당기간 줄어들어 즉 조업이 단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 12. 일거리가 없어서 ”에 포함한다.

(나) 그렇지 않음

평소 1주간에는 36시간이상 일하였으나, 지난 조사대상 주간에 36시간미만 일한 사람에게는 안에 V표시하고 그 이유를 물어 해당사항에 표시 한다.

21.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더 많이 하길 원하나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경기후퇴, 주문감소 등으로 36시간미만 일하고 있는 경우와 고용계약 시간이 주당 36시간미만이나, 이 일자리 밖에 없어서 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2. 자재부족으로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원료나 자재가 부족하여 못하는 경우.

23. 공장 또는 시설수리

공장의 시설수리나 개축 또는 기계고장, 정전 등으로 일을 적게 하는 경우.

24.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개인의 일시적 병이나 연가, 휴가 및 가정의 경·조사등의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일을 적게 하는 경우.

25. 일기 불순으로

날씨가 나빠 부득이 일을 평소보다 적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

26. 기 타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유를 간단히 기록하여야 한다.

(9) 가9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여부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본항은 취업자의 불완전취업상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된 항목이다.

1.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평소 36시간미만 취업자와 평소 36시간이상 취업자 모두 평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변화를 원치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 조사중에, 연로 또는 지병등으로 직장(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자가 간혹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 2. 현재하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음” 이나 “ 3. 다른 직장으로 바꾸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그밖의 다른 응답은 모두 여기에 분류한다.
- 자영자의 경우 “사업확장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을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음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안정된 수입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추가로 다른 직업을 갖기 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3. 다른 직장으로 바꾸고 싶음

현재 하는 일에서 수입 또는 기타 근로조건 때문에 다른 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 동일 직종이라도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비임금근로자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길 원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며, 단순한 장소의 변경은 제외한다.

(10) 가 10 전직희망 이유

다른 직장(업)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하는 일을 다른 일로 바꾸기 원하는 이유중 해당사항에 ○표시한다. 단, 동일 직종이라도 직장을 바꾸기 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며, 단순히 장소만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소득이 적어서

현재 하는 일은 수입 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전직을 원하는 경우.

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현재 하는 일이 고정적인 일이 아닌 임시적인 일이어서, 또는 직장의 장래성이 없어서 전직을 원하는 경우.

3. 적성에 맞지 않아서

현재 하는 일 또는 직장이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직을 원하는 경우.

4. 작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작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전직을 원하는 경우.

5.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직을 원하는 경우.

6. 정년이 되어서

정년퇴직할 때가 되어 전직을 원하는 경우.

7. 기 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11) 가 11 근속년수

현 직장(사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본 항목은 조사대상자가 현 직장(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과거에 그 직장에서 근무하다 그만두고 일정기간후(6개월이상) 다시 그 직장(사업체)에 근무하였을 경우 그 이전의 근무기간은 본 항목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동일기업의 타사업체(지점)간의 이동이나 동일회사내에서 부서의 이동은 동일 기업내의 계속적인 근무로 간주한다. 단, 군입대시 휴직인 경우는 복무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또한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6개월이상일 경우)은 제외한다.
- 자영자인 경우 근무년수는 그 일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주의) 근무기간이 3년이상인 자는 「가 12」, 「가 13」항에 사선(≡)을 긋고 「가 14」항부터 질문한다.

(12) **가 12 구직기간**

현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취업자가 현 직장(일)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활동을 하였던 기간을 말한다.

- 근무기간이 3년미만인자만 조사한다.
- 여러번 직장을 옮겼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맨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시기부터 현 직장(일)에 취업되기까지의 구직활동기간을 말하고, 만일 실직기간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자가 혹은 학생이었던자가 재학중 직장을 보장받고 졸업후 즉시 현 직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는 구직기간이 “없었음”에 해당된다.

(13) **가 13 전직회수**

지난 3년간(1983.11.16~1986.11.15) 직장(사업체)을 옮긴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 12」항과 마찬가지로 근속년수가 3년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3년동안 직장(사업체)을 옮긴 회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여기서 전직이란 한 직장(일)에서 다른 직장(일)으로 취업상태가 변동된 경우를 말하며 동일기업의 타지점간의 이동이나 동일기업내의 부서이동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본 항목에서의 전직개념은 동일 사업체(일)라 하더라도 일단 그 직장(일)을 그만 두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6개월이상) 다시 들어간(시작한) 경우는 전직으로 간주한다.

(14) **가 14 직업훈련(교육)이수 여부**

현 직장(일)에 취업하기 전에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공·사립 기관을 막론하고 사실 유무를 조사한다.

- 취업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자격취득(예, 운전면허증등)을 위한 훈련(교육)과, 전에 별도의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한 것이 아니고 그 직(일)에 종사하다 자연히 취득하게 된 기능(예, 이용기능등)은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그리고 본 항목은 현 직장(일)에 종사하기 이전을 그 대상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현 직장이나 일에 들어와서 받았던 직업훈련(교육)은 제외된다.

(15) **가 15 직업훈련(교육)의 유용성 여부**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취업하는 데에 유용했습니까?

본 항은 「가 14」항에서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의 유용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설정된 항목이다.

- 직업훈련(교육)을 여러가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직업훈련(교육)의 유용성여부는 현재 취업(일)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 직장(일)에 들어오기 전에 이수했던 직업훈련(교육)이 현 직장(일)에 유용했는가 여부가 쫓점이 된다.

10. 유용했음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현 직장(일)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 유용하지 않았음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현 직장(일)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경우로서 유용하지 못한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여 알맞는 항목에 ○표 한다.

21. 취업기회가 없어서

경기 부진이나 생산활동의 둔화로 인해 취업기회가 없어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받은 기능에 맞게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22. 훈련수준이 맞지 않아

받았던 훈련(교육)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취업하고자 했던 직장에 취업을 못했던 경우가 해당된다.

23. 취업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직업알선 기관의 미비 및 취업정보 등의 부족으로 자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4. 기 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한다.

(16) 가16 소득

지난 1개월 동안 귀하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 항목은 취업시간과 더불어 불완전 취업상태를 파악하려는 항목이다.

- 여기에서의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을 말하며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은 제외한다.
- “지난 1개월동안”이란 말은 조사주일이 포함된 달의 바로 전월의 1개월간을 말한다.
-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을 낮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일당으로 받는 사람 또는 매일 품삯을 받는 사람은 한

달간의 소득을 모두 합쳐 기입한다.

- 임금근로자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액을 기입하고 자영근로자는 사업소득 중에서 가계로 들어오는 소득만을 조사하고 총소득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 2가지 이상 취업에서 오는 소득은 모두 포함한다.
- 농사일과 같이 월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농림어업 종사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는 “9”에 ○표 한다.
(주의) 질문이 끝난후 “라1항”을 질문한다.

라. 실업자 사항

조사대상주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한 사람, 일시적 병등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중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I) 나1 희망취업형태

구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지난 1주간 구직하고자 했던 일의 종류는 어떠한 일인지를 묻는 항목이다. 먼저 구하는 일자리가 임금근로인지 비임금근로인지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한다.

□. 임금근로

개인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하고 연봉·봉급·구전·팁·삿 또는 현물을 받는 일자리를 말한다.

1. 주로하는 일

여기에서 주로 하는일이란 취업으로서의 주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틈틈이 하는 일

주된 활동으로는 가사나 통학을 하고 있으면서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 비임금근로

3. 자영업

자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의) 이 항목에 분류된 사람은 「나2」항을 사전(☐) 곳고 직접 「나3」항을 조사한다.

(2) 나2 취업가능최저임금

월급여가 적어도 얼마 수준이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응답자가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이면 일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따라서 취업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아야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여 해당 사항에 ○표 한다.
-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자가 본 항의 대상이 되므로 「나1」항에서 비임금근로 즉, “3. 자영업”을 희망한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다.

(3) 나3 구직경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실업자의 구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응답항목을 응답자에게 알리지 말고 구직경로를 물어 주된 사항 하나에 ○표를 한다. 확인사항 「㉠ 1주간의 구직여부」

항의 “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 ”에 해당된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 이전의 주된 구직활동 상태를 물어 조사한다.

1. 친구, 친지알선

친구 또는 친지에게 취업알선을 의뢰한 경우로 여기서는 실업자 본인은 물론 본인을 대신하여 부모 형제가 부탁한 경우도 해당된다.

2. 취직시험

조사대상 주간에 취직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취직시험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원서를 접수시키거나 또는 원서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3. 사업체 직접방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공장, 집포 또는 기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취직자리를 부탁하거나 알아본 경우를 말한다.

4. 신문광고를 내거나 찾아봄

신문이나 기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구직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란을 찾아본 경우

5. 직업소개소

공·사립을 불문하고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고 취업알선을 의뢰한 경우

6.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점포 또는 사업장을 물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구입, 사업장 준비등을 위한 각종 준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사업장을 마련한 사람이 곧 개업하기 위하여 진열장을 만들고 상품을 진열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는 취업으로 분류하므로 다시 '확인사항'의 「⑦ 활동상태」항으로 돌아가서 “□ 일하였음”에 체크하고 취업자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7. 기 타

상기 구직경로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체에 전화나 편지로 취직자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해당된다.

(4) 나 4 구직기간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직기간은 실질적으로 실직상태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직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구직기간의 산정

구직기간의 산정은 조사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으로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조사대상주간 마지막 날까지를 기산한다.

16일이상 구직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이하 기간은 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총 구직기간이 1개월미만의 경우는 1개월로 간주한다.

○ 계속성

구직기간은 계속적인 구직활동 기간만을 의미한다. 계속성

이런 구직활동을 계속하였거나 구직알선을 의뢰한 후 계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지에게 직업알선을 의뢰한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는 구직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응답을 보인 사람은 실제적인 구직활동기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질문방법

직장을 그만두고 즉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므로 구직기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는 이직한 때를 묻거나 또는 전직이 없는 경우 학교졸업 또는 제대시기를 묻고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한 시기와의 간격을 물어 판단하여야 한다.

(5) 나5 전직유무

전에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실직이전의 취업상태를 확인하여 전직실업자와 신규실업자로 구분한다.

1. 있었음

여기 해당된 자는 전직실업자다.

2. 없었음

여기에 해당된 자는 신규실업자로서 전직이 없이 새로이 노동력 대열에 들어온 사람으로 여기에는 과거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간에 비경제 활동인구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취업전선에 나타난 사람도 포함한다.

예 : 은행에 다니던 사람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다

시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주의) “ 1. 있었음 ”에 해당되는 자는 전직실업자로서 「나6」항을 계속 질문하고
“ 2. 없었음 ”에 해당되는 자는 신규실업자로서 「나6」항에서 「나9」항까지 사선(☒)을 긋고 「나10」항부터 질문한다.

(6) **나6 전산업**

전에는 어디서 일하였습니까?

실직이전에 종사했던 일에 대한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말하며 조사요령은 「가1」항과 동일하다.

- (주의) 본항목 하단의 ※ □□□ 란은 산업분류기호 기입란으로 조사요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7) **나7 전직업**

전에는 주로 무슨일을 하였습니까?

실직 이전에 종사했던 일에 대한 것으로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사업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했었느냐 또는 그가 수행했던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가를 말하며 여러가지 일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또는 주된 일을 말하며 조사요령은 「가2」항과 동일하다.

- (주의) 본 항목하단의 ※ □□□ 란은 직업분류기호 기입란으로 조사요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8) **나8 전 종사상의 지위**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사요령은 「가3」항과 동일하다.

(9) **나9 실직이유**

전에 하였던 일을 왜 그만 두었습니까?

전직 실업자로서 전직을 그만둔 이유를 물어서 해당사항에
○표한다.

1. 폐업·해고

사업이 끝나거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자동적으로 직장을 잃
게된 경우와 사업체의 사정 또는 개개인의 부실등으로 인
하여 해고당한 경우가 해당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다.

- 사업의 종료(계절적사업 포함)
- 고용주 사망
- 사업의 축소
- 사업체 도산
- 업무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소
- 사업체 경영권 이전
- 휴·폐업
- 공장이전
- 공장재해 등

2. 보수(수입)가 적어서

보수가 적거나 받지 못하여 그만둔 경우

3. 사업부진

자기가 하던 사업이 경기후퇴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정으
로 사업경영이 잘되지 않아 사업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다치고 있는 직장의 사업부진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하고 있는 일이 임시적인 일이거나, 직장의 전망이나 자기가 그 직장에 근속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된다.

5. 본인의 학업때문에

본인의 학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6. 가정사정으로

주로 여자가 해당되며 직장에 다니는 유부녀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만둔 경우 또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 주위의 여건상 더이상 직장에 다니기 어려워서 그만둔 경우, 부모가 연로하여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그만둔 경우, 자녀(형제)의 교육때문에 직장(일)을 그만둔 경우등이 해당된다.

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작업환경이나 조건의 불만족으로 그 직을 그만둔 경우로서 여기에 포함되는 작업환경으로서는

- 작업시간의 과다
- 비위생적인 작업조건
- 고된작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 기 타

상기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이유를 자세히 기입한다.

(10) 나 10 취업난 이유

취직(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업기회가 없어서

취업자 사항의 「가 15」항의 “21. 취업기회가 없어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기부진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계절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해당계절이 아닌 관제로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2. 취업정보를 몰라서

직업알선 기관 및 취업정보망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로 취업자 사항의 「가 15」항의 “23. 취업정보가 충분치 않아서”와 같은 내용이 된다.

3.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주로 “기술부족” 또는 “기술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와 학력이 낮아 학력제한이나 지식부족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자격이나 학력이 너무 높아 적당한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남녀차별 때문에

남녀차별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이나 기업주의 편견 등으로 주로 여자가 해당될 것이나 남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5.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취업하고자 하나 기대하는 수준만큼 보수를 주는 직장(일)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작업환경의 주내용은 작업시간의
과다, 비위생적 작업조건 등이 해당된다.

6. 기 타

상기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11) 나 11 직업훈련(교육)희망여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원합니까?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소요를 파악하고자 설정된 항목이다.

□. 원 함

직업훈련(교육)을 받기 원할 경우 “□. 원함”에 V표시하
고 다시 훈련(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를 원하는지 해
당항목에 O표한다.

20. 원하지 않음

직업훈련(교육)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12) 나 12 생계유지 방법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실업자가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
는 항목이다.

1. 가족 및 친지보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벌어놓은 소득으로

전에 취업했을 때 벌어놓았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

는 경우로서 이 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적이 있던 실업자이며, 또한 재산소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의미로 주로 막일을 하는 날품팔이 노동자가 해당된다.

3. 빚을 얻어서

남에게 빚을 얻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주택마련이나 영농등을 위해 얻는 빚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히 생계(호구지책)를 위한 빚만 포함된다.

4. 영세민 보호

국가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현금이나 현물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재산소득(이자, 집세등)

갖고 있는 재산이 있어 이자나 집세 또는 배당금등의 재산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연금

퇴직후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연금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7. 기 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그 사유를 기입한다.

(주의) 질문이 끝나면 공통사항인 「라 1」항을 질문한다.

마. 비경제활동인구사항

비경제활동인구 조사항목은 4개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확인사항 「㉠ 취업의사 유무」항에서 “1. 하겠음”에 표시된

사람에게만 질문한다.

(1) **다1 희망취업형태**

원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 임금근로

1. 주로 하는 일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란 그 사람의 주된 활동이 취업
을 원하는 경우이다.

2. 틈틈이 하는 일

주된 활동은 가사나 통학등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
는 일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다른 주된 활동때문에 취업활동을 주로 하지 못하
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 비임금근로

3. 자영업

자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고용주나 자영자가 해당
된다.

(2) **다2 취업희망이유**

직장 또는 일거리를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간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았지만, 알맞는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게 묻는 항목으로 여러가지 이유에 해당될 때는 그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의 사항에 ○표한다.

1. 생활비를 벌려고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생활이 곤란하여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학비나 또는 용돈이 궁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시간이 남아서

가정주부나 노인들이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일거리를 찾는 경우이다.

4. 보다 나은 경험(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경험을 위해서 혹은 새로운 기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5. 기 타

상기 사항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입한다.

(3) 다3 비구직 이유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항은 취업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조사대상주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그 사유가 구직 단념으로 볼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답자가 응답을 소홀히 하기 쉬우므로 자세하게 묻고 여러가지 상

황과 관련지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자신에게 알맞는 직업이나 일거리가 없을 것으로 믿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전에 구직하였던 경험으로 보아 다시 구직활동을 해 보았으나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단념한 경우나, 지역, 성별의 차별대우, 과거의 범죄기록, 신체의 외관상의 결함. (추함, 흉터, 비대, 왜소등)등을 이유로 종종 취업을 거부당하여 현재는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경우

3. 자격이 부족하여서

학력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여,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아서 등의 이유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하여서

교통사정이 너무 불편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기 타

상기 어느 사항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주로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4) 다 4 6개월간의 구직경험여부

지난 6개월동안 한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1. 구해보았음

지난 6개월(5월9일부터 11월8일)동안에 한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2. 구해보지 않았음

비록 취업의사는 갖고 있었으나, 지난 6개월동안에 한번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의) 질문이 끝나면 공통사항인 「라1」항을 질문한다.

바. 노동력 유동사항

- 고용구조특별조사 특징중의 하나가 1년전의 노동력 유동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 노동력 유동사항은 총 8개항목으로 지역간, 산업간, 직종간의 노동력 유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1년전의 상태를 질문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입장에서 기억해 내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조사요원은 본 조사 목적이 바로 1년전의 노동력 유동상태를 파악하는 주요한 항목임을 깊이 이해하고 성실하고 설득력있게 질문해야 한다.
- 여기서 1년전이란 85년11월의 15일이 포함된 1주간(1985년11월10일 ~ 11월16일)을 말한다.

(1) 라1 1년전 거주지

- 지금부터 1년전(1985.11.10일 0시기준)의 거주지가 같은 구·시·군일 경우 “1. 같은 구시군”에 ○표하고

다른 경우에는 “ 2. 다른구시군 ”에 ○표한 후 시·도와 구·시·군명까지 기입한다.

이때 행정구역 번호는 반드시 “ 86년 고용구조특별조사 행정구역부호 ”에 따라 기입하여야 한다. 단, 충남 대전시와 경남 울산시의 경우에는 시 부호를 제외하고 구 부호를 적어 넣어야 한다.

- 위 2 가지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1년전(1985.11.10.0시 기준)에 13세였던 사람과, 1년전에도 14세이상이었지만 그당시 해외에 거주 하였거나 현역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였던 사람은 외국명이나 제외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다.

1년전 14세이상으로 제외자 4111 ○ 해외거주자 ○ 제외자 (현역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등)	1년전 13세였던자 5111 (연령미달자)
---	----------------------------

2) **라 2 1년전 활동상태**

그 당시에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부터 1년전(1985.11.10 ~ 11.16)에 대상자의 활동상태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개인의 활동상태를 가장 알맞게 설명하는 사항에 ○표한다.

1. 주로 일하였음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란 그 사람의 주된 활동이 취업인 경우이다.

2. 틈틈이 일 하였음

주된 활동은 가사나 통학이었지만 틈틈이 하는 일을 했을 경우가 여기에 포함한다.

따라서, 가사·통학등을 주로 하면서 틈틈히 일했던 경우는 여기에 속한다.

3. 구직활동

여기에서의 구직활동은 비록 가사나 통학을 주로하고 짧은 시간을 내어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도 포함되며 구직활동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사항 「⑦활동상태」항의 “22. 구직활동”을 참고로 한다.

4. 가 사

1년전의 활동상태가 주로 가사인 경우로서 개념은 확인사항 「⑦ 활동상태」항의 “23. 가사”와 동일하다.

5. 통 학

1년전의 활동상태가 주로 학업에 전념한 경우로서 개념은 확인사항 「⑦ 활동상태」항의 “24. 통학”과 동일하다.

6. 연소·연로

그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 익있는 일도, 구직활동도 또한 가사일도 하지 않고 아무일 없이 소일했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기적인 질병 또는 노년기 증상에 의한 심한 지체부자유 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며 “7. 심신장애”에 분류하여야 한다.

7. 심신장애

1년전 활동상태가 주로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개념은 확인사항 「⑦ 활동상태」항의 “ 26. 심신장애 ”와 동일하다.

8. 기 타

상기 1~7 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며 1년전에 제외자(13세자, 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교도소수감자등)였던 사람과 자원봉사, 구호사업 활동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따라서 「라1」항의 “ 3. 기타”에 체크된 사람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주의) “ 1 ”, “ 2 ”에 해당되면 다음 항(「라3」)으로 계속 질문하고 “ 3~8 ”에 해당되면 여기서 질문을 끝낸다.

(3) 라3 이직여부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이 지금의 직장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지금부터 1년전의 직장파 현재직장이 동일한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여기에서 직장이란, 임금근로자는 다녔던 사업체 단위를 말하고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하고 있던 일의 종류업종을 말한다.

(비임금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예”)

- 1년전 전자판매 대리점을 경영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소개업으로 전업한 경우
- 1년전 구멍가게를 경영하다가 지금은 임금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1년전 행상을 하다가 지금은 물엿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등.

1. 동일함

그 당시 직장과 현재 직장과 동일한 경우

2. 다름

그 당시 직장과 현재 직장과 다른 경우

3. 그만두었음

그 당시에는 직장을 갖고 있었으나, 그 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 여기에 속한다.

○ 조사요원 유의사항

- “1. 동일함”에 해당된 자는 「라4」항을 사선(☒) 곳고 「라5」항부터 질문한다.
- 1년전 직장과 지금의 직장이 동일한 경우 라5~라8의 조사항목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조사되어야 한다.
- 그 이유는 1년전과 다름없는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장의 산업이라든가 대상자의 직업이 변동 될수도 있고(생산직→사무직으로 변동) 또한 종사상의 지위는 물론 직장의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라4 이직이유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을 옮긴(그만둔)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전의 직장에서 현재의 직장으로 옮겼거나 또는 그만둔

이유를 상세하게 물어서 가장 알맞는 사항에 ○표 한다.
본 항은 실업자 사항 「나9 실직이유」 항의 세부항목들과 같은
항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나9」 항을 참고한다.

(5) **라5 1년전 산업**

그 당시 직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무엇입니까?

1년전 직장의 산업을 기입한다. 산업은 개인이 담당하는 일
의 산업이 아니라 그 사업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그 산
업이 현재와 동일하더라도 기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산
업의 개념은 취업자사항의 「가1」 항의 개념과 동일하며 특
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조사요원이 임의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상자의 응답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
다. 왜냐하면 1년전 산업이 지금의 산업과 반드시 같다고
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의) 본 항목 하단의 ※ 란은 산업분류기호 기
입란으로서 조사요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6) **라6 1년전 직업**

그 당시 직장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상자가 1년전 그 직장에서 하고 있던 일, 즉 직업을 파
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라5」 항과는 달리 대상
자 자신이 그 당시 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념은 취업자사항의 「가2」 항과 동일하다.

(주의) 본 항목 하단의 ※ 란은 직업분류기호란으로
서 조사요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7) **라7 1년전 종사상의 지위**

그 당시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1년전에 속해 있던 사업체에서의 지위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항목으로서 해당 사항에 ○표하며 개념은 취업자 사항의 「가3」항과 동일하다.

(8) **라8 1년전 사업체 종업원 규모**

그 당시 직장(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였습니까?

1년전 직장의 종업원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업원수는 사업체 단위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개념은 취업자 사항의 「가5」항과 동일하다.

IV. 기타 조사표류 작성 및 제출

1. 종합표 기입요령

- 종합표는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표를 기준으로 조사요원이 1부 작성하여 조사표와 함께 제출한다.
- 조사구소재지 : 조사구의 해당 행정구역을 동·읍·면(행정동)까지 기입한다.
- 조사구번호 : 조사표의 조사구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① 거처번호 : 조사표의 거처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② 가구번호 : 조사표의 가구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③ 가구주 : 조사표에 기입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 ④ 총가구원 : 조사표 가구원 상황의 계와 일치한다.
- ⑤ 대상가구원 : 가구원중 14세이상 인구이며, 조사표 가구원 상황란의 대상가구원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⑥ 취업자수 및
 - ⑦ 실업자수 : 취업자, 실업자 정의에 따라 조사한 가구내의 취업자 수 및 실업자수를 말하며, 조사표 가구원 상황란의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⑧ 가구구분 : 농가·비농가중 해당란에 ○표 한다.
- ⑨ 비고 : 기타 특기사항(무취업가구의 생계유지방법, 제외자수)을 기입.
- 작성 년월일 및 작성자
작성 완료된 '일자'를 기입하며, 조사요원이 서명날인 한다.

2. 집계표 기입요령

가. 작성기관

- 동·읍·면 : 조사구별로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구·시·군에 제출
- 구·시·군 : 동·읍·면별로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시·도에 제출
- 시 도 : 구·시·군별로 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제출

나. 기입요령

(1) 행정구역 및 조사구

동·읍·면에서는 조사구번호를 기입하며 시·도 및 구·시·군에서는 각각 차하급 기관의 행정구역명을 기입한다.

(2) 농가 및 비농가

종합표에 표시된 농가, 비농가 구분에 따라 해당 항목별로 집계한다.

(3) 총가구원, 대상가구원,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를 종합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별로 집계한다.

3. 조사표 편철 및 기입요령

가. 작성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구별로 1권씩 편철하도록 한다.

나. 조사표 표지 기입요령

(1) 행정구역

해당 행정구역을 동·읍·면(행정동) 단위까지 기입한다.

(2) 행정구역번호

조사표 표지 뒷장에 표시된 행정구역번호를 참고하여 해당 행정구역을 구·시·군 단위까지 기입한다.

단, 충남 대전시와 경남 울산시는 시부호를 제외하고 구부호를 기입한다.

“예” 충남 대전 동구

3	4	0	1
---	---	---	---

 ”
 경남 울산 중구

3	8	0	1
---	---	---	---

(3) 조사구 번호

해당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4) 조사표 부수

조사구 별로 조사표 부수 및 조사대상 가구원 수를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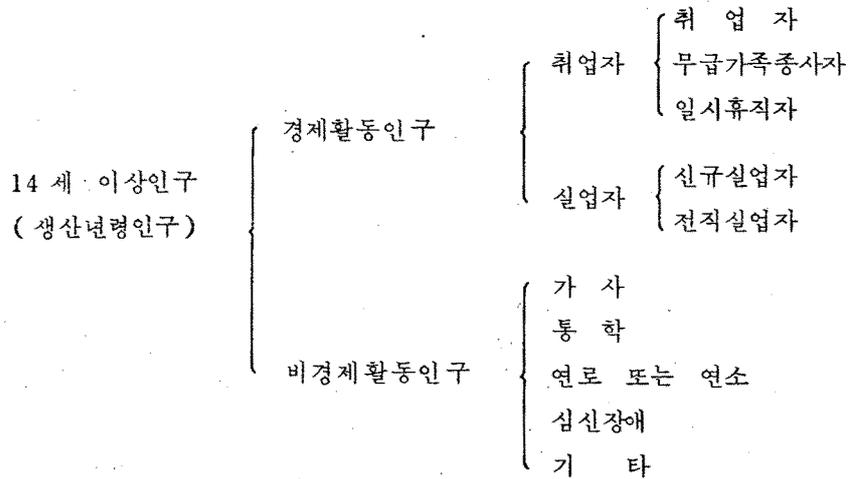
조사표	_____ 부
부 수	(명)

(5) 조사자 성명

조사요원의 성명을 기입한다.

부 록

1. 경제활동인구 분류



2. 경제활동인구

만 14세이상 인구중 조사주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가. 취업자

- (1) 조사주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한시간 이상 일한 자
-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 18시간이상 일한자
- (3) 직업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조업중단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

(일시 휴직자)

※ 참고

취업자는 주로 일한자(조사표 ⑦항의 11에 해당)와 틈틈이 일한자(⑦항의 12) 및 일시휴직자(⑧항 11~14)를 말한다.

나. 실업자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못한채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

※ 참고

실업자는 ⑩란 1에 해당되며, 실업자 사항이 조사되는 사람

3. 비경제활동인구

만 14세이상 인구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사람

※ 참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표 「⑪ 취업의사유무」항에서 조사된 자를 말한다.

승인번호 : 111-11-18

통계법 제8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
 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
 호되어야 한다.

1986년 고용구조특별조사표

※ <조사요원은 다음 사항을 응답자에게 읽어주십시오>

이 조사는 매년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국민 모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구원은 이 집에서 항상 같이 먹고 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장기간 집을 떠나 있는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 여행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잠깐 다니러 온 친척, 친구 등은 제외됩니다.

관 리 사 항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거처 및 가구번호	가구당부수
				<input type="checkbox"/> 부중 <input type="checkbox"/> 부

가 구 원 명 부						가 구 원 상 황			
번호	가구원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연 령	비 고	구 분	남	여	계
1			남, 여			총 가구원			
2			남, 여			제 외 자			
3			남, 여		14세미만				
4			남, 여			14세이상			
5			남, 여			대상가구원			
6			남, 여			취업자			
7			남, 여			실업자			
8			남, 여			가구구분	1. 농 가 2. 비농 가		
9			남, 여						
10			남, 여						

조사요원 기입사항	시·도명	조사자성명	응답자성명(전화번호)	조사요원 의견란
----------------------	------	-------	-------------	---------------------

경 제 기 획 원

인 적 사 황	① 가구원 성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 별	④ 연 령	⑤ 배우 관계	⑥ 교 육 정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번호 		1. 남 자 2. 여 자	세는 나이() , 띠() 19. []년 []월 []일생 []세	1. 미 혼 2. 유배우 3. 사 별 4. 이 혼	1. 국민학교 } 1. 졸 업 2. 중 학교 } 2. 재 학 3. 고등학교 } 4. 초대 및 전문대 } 3. 중 퇴 5. 대 학 } 6. 대 학원 이상 } 7. 안다됨

학 업 사 황	⑦ 학 동 상 태	⑧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⑨ 1주간의 구직여부	⑩ 취업가능성여부	⑪ 취업의사유무
	지난 일주간(1986. 11. 9~11. 15)에 소급이라도 수입을 얻었는지 알려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일하였음 11. 주로 일하였음 12. 가끔 일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조금도 일하지 않았음 21. 일시휴직 25. 연소연고 22. 기타휴직 26. 임신장액	지난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갖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었음 30. 없었음 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1. 인시커병 12. 연가 또는 휴가 13. 노동쟁의 14. 휴업수단 20. 기타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란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않았음 ● 일시적병 ● 일기불순 ● 장애인준비 ●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소집 ● 직장 또는 구직결과대기 ● 가족의 환혼상제 3. 구해보지 않았음 (10)	지난주에 구하던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11) 2. 없었음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1. 하겠음 (12) 2. 하지 않겠음 (13)

취업자 사항

가1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직장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가2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학위	가3 현재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 1. 상 용 4. 고 용 주 2. 임 사 5. 자 영 자 3. 인 용 6. 부 담 가 족 종 사 자	가4 현재직장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체) 2. 회 사 3. 기타법인단체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가5 현재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19인 8. 500~999인 4. 2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가6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였습니까? 1. 친구·친지인선 2. 취직시험 3. 사업체 취업방문 4. 신문광고 5. 직업소개소 6. 자기사업 7. 기타()
--	--	---	---	--	---

가7 지난주 수입을 볼 때 어느 일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 시간 조사요원 점검란 1. 1~35시간 (가7)로 2. 36시간 이상 (가9)로 ※ 일시휴직자는 취업시간에 0.0.0을 기입하고 "1. 1~35"에 ○표함 것	가8 평소에도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러함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건강때문에 12. 일거리가 없어서 13. 가사, 봉학으로 14.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15. 기타()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음 지난주 평소보다 적게 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일거리가 없어서 22. 자재부족으로 23. 공장 또는 시설수리 24. 개인 또는 가정사정 으로 25. 일기불순으로 26. 기타()	가9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1. 계속 그대로 일하고 있음 2.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음 3.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고 있음 가11	가10 다른 직장(일)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용이 적어서 2.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3. 처수에 맞지 않아서 4. 작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5.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6. 정년이 되어서 7. 기타()
--	--	---	---

가11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6개월 미만 3. 6~12개월 미만 4. 1~3년 미만 5. 3~5년 미만 6. 5~10년 미만 7. 10~20년 미만 8. 20년 이상	가12 현재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3개월 미만 3. 3~6개월 미만 4. 6~12개월 미만 5. 12개월 이상 6. 없었음	가13 지난 3년간(1983. 11. 16~1986. 11. 15) 직장(사업체)을 옮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4. 없음	가14 현재 직장(일)에 취업하기 전에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11. 사설학원에서 12. 공장직업훈련기관에서 13. 사업체부설기관에서 20. 받지 않았음 (가16)로	가15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이 취업하는데 유용했습니까? 10. 유용했음 <input type="checkbox"/> 유용하지 않았음 21. 취업기회가 없어서 22. 훈련수준이 맞지 않아서 23. 취업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24. 기타()	가16 지난 1개월 동안 귀하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5만원 미만 2. 5~10만원 미만 3. 10~20만원 미만 4. 20~30만원 미만 5. 30~50만원 미만 6. 50~70만원 미만 7. 70~100만원 미만 8. 100만원 이상 9.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 부문종사자 (가16)로
---	---	--	---	--	---

실업자 사항

나1 구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 3. 자영업 (다3으로)	나2 월급여가 적어도 얼마수준이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5만원 미만 2. 5~10만원 미만 3. 10~15만원 미만 4. 15~20만원 미만 5. 20~30만원 미만 6. 30만원 이상	나3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1. 친구·친지 알선 2. 취직시험 3. 사업체 직접방문 4. 신문광고를 내거나 찾아봄 5. 직업소개소 6.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7. 기타()	나4 구직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개월 () 년 월	나5 전에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다1으로)	나6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였습니까? ● 직장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 [] []
나7 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 [] [] []	나8 전에 다녔던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1. 상 용 2. 임 시 3. 일 용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 4. 고용주 5. 자영자 6. 무급가족 종사자	나9 전에 하였던 일들에 그만두었습니까? 1. 폐업·해고 2. 보수(수입)가 적어서 3. 사업부진 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5. 본인 학업 때문에 6. 가정사정으로 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8. 기타()	나10 취직(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업기회가 없어서 2. 취업정보를 몰라서 3.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 4. 남녀차별 때문에 5. 보수가 낮거나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6. 기타()	나11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원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원함 11. 자비로 12. 국비로 13. 사업체 부담으로 20. 원하지 않음.	나12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1. 가족 및 친지보조 2. 벌어들인 소득으로 3. 빚을 얻어서 4. 영세민보호 5.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6. 연금 7. 기타() (라1으로)

비경제활동인구사항

다1 원하는 일의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 3. 자영업	다2 직장 또는 일거리를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활비를 벌려고 2.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3. 시간이 남아서 4. 보다 나은 경험(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5. 기타()	다3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3. 자격이 부족하여서 4. 교통이 불편하여서 5. 기타()	다4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직장 또는 일거리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구해보았음 2. 구해보지 않았음 (라1으로)
--	---	--	--

노동력유동사항

라1 1년전(1985. 11. 10~1985. 11. 16)에 살던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다릅니까? 1. 같은 구·시·군 2. 다른 구·시·군 () 시·도 () 구·시·군 3. 기타() ※ [] [] []	라2 그 당시에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주로 일하였음 2. 틈틈이 일하였음 3. 구직활동 4. 가 사 5. 통 화 6. 연소·연로 7. 심신장애 8. 기 타 (질문함)	라3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일)과 현재의 직장(일)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1. 동일 함 (라5으로) 2. 다 리 3. 그만 두었음	라4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을 옮긴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폐업·해고 2. 보수(수입)가 적어서 3. 사업부진 4.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5. 본인 학업 때문에 6. 가정사정으로 7.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8. 기타()
라5 그 당시 직장의 주된 산업 활동은 무엇입니까? ● 직장 또는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 [] []	라6 그 당시 직장(사업체)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맡은 일의 종류 ● 직명 또는 직위 ※ [] [] []	라7 그 당시 직장(일)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임금근로자 1. 상 용 2. 임 시 3. 일 용 <input type="checkbox"/> 비임금근로자 4. 고용주 5. 자영자 6. 무급가족 종사자	라8 그 당시 직장(사업체)의 종업원수는 얼마였습니까? 1. 1~4인 2. 5~9인 3. 10~19인 4. 20~49인 5. 50~99인 6. 100~299인 7. 300~499인 8. 500~999인 9. 1000인 이상 (질문함)

'86고용구조특별조사 보조조사표

가구번호		※ 조사요원이 기입																
① 가구원 번호	② 성명	③ 오늘의 취업시간 (1986. 11. 9~11. 15)								현재의 취업상태					1년 전 취업상태 (1985. 11. 10~1985. 11. 16)			
		11 월							1 주 간의 총취업시간	④ 사업체의주된활동	⑤ 하는 일의 내용	⑥ 종업원수	⑦ 근속년수	⑧ 취업까지 구직기간	⑨ 직업훈련 이수여부	⑩ 사업체의 주된 활동	⑪ 하는 일의 내용	⑫ 종업원수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명		개월	<input type="checkbox"/>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았음			명	

※ 만14세 이상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뒷면 기입요령을 참고하십시오)

◎ '86 고용구조특별조사 보조조사표 기입요령

1. 가구번호

가구명부의 가구번호와 일치 하여야 한다.

2. ①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는 가구원의 조사 순위에 따라야 한다.

※ 가구원의 조사 순위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미혼자녀
4. 미혼 형제
5. 부모·조부모
6. 기혼자녀·형제
7. 기타 친척
8. 동거인

3. ②성 명

14세 이상 가구원의 성명을 가구원의 조사 순위에 따라 기입한다.

4. ③오늘의 취업시간

- 조사대상기간중 실제 일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점심시간이나 개인적인 일로 일에서 떠난 시간은 제외한다.
- 실제 작업시간에서 30분 이상은 한시간으로 계산한다.
- 여러가지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 일에서 일한 시간을 합계하여 기록한다.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없으면 ○으로 표시한다.

5. ④사업체의 주된활동

- 취업하고있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말한다. 즉 사업체에서 조사대상자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말한다.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은 다음 예 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예) 고무신 제조
발농사
잡화소매

6. ⑤하는 일의 내용

- 취업하고있는 사업체에서 수행한 일의 종류를 묻는 것이다.
- 말은 일의 종류와 직명 또는 직위를 자세히 기입한다.

예) 세무공무원 - 6급
일반문서취급사원 - 총무계장
현금출납사무원 - 계원
자동차 정비사

7. ⑥종업원수

- 종업원수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한다. 즉 본사와 지사 또는 지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사는 본사 직원만, 지사 또는지점은 지사 또는 지점 인원만 기입한다.
- 고용주는 반드시 포함 시킨다.

8. ⑦근속년수

- 근속기간은 계속해서 그 직장에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과거에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하여 일정기간후(6개월이상)다시 복직하였을 경우, 전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 동일 기업의 타지점간의 이동이나 동일 기업의 부서이동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6개월이상의 경우) 및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9. ⑧구직기간

-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의 사업이나 직장을 갖기 직전 구직활동을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개월 단위로 기입한다.

10. ⑨직업훈련 이수 여부

-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한다.

11. ⑩~⑫ 1년전 상태

- 1년전(1985. 11. 10~11. 16)에 종사했던 사업체의 주된활동, 하였던 일의 내용, 종업원수를 기입하는 것으로 그 개념은 「현재의 취업상태」와 같다.

가구조사대상 가구관리용 변동신고서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변동신고서 198 년 월분	① 조사구 번호 [][][][][][]	② 가구표 정리 조사담당 지도구책임자 담당	③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15%;">전 월</td> <td style="width: 15%;">증 가</td> <td style="width: 15%;">감 소</td> <td style="width: 15%;">금 월</td> </tr> <tr> <td>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구</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전 월	증 가	감 소	금 월	가구					인구					출생수 ④ 사망수
	전 월	증 가	감 소	금 월															
가구																			
인구																			

1 가구 증가 (⑤ 가구 ⑥ 명)						
⑦ 가구 번호	⑧ 가구주이름	⑨ 가구원수	⑩ 변동일자	⑪ 전 거 주 지	⑫ 이 동 사 유	⑬ 구 분
1		198		시도 구시군	1. 2.	
2		198		시도 구시군	1. 2.	
3		198		시도 구시군	1. 2.	
4		198		시도 구시군	1. 2.	
5		198		시도 구시군	1. 2.	
6		198		시도 구시군	1. 2.	
7		198		시도 구시군	1. 2.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분 가 한 가 구 수

가 구

※ 1. ⑬ 구분란은 전입, 전입누락, 착오등을 기입
 2. ⑤ 란에는 조사구내 분가한 가구수도 합계됨

2 가구 감소 (⑭ 가구 ⑮ 명)						
⑯ 가구 번호	⑰ 가구주이름	⑱ 가구원수	⑲ 변동일자	⑳ 목 적 지	㉑ 이 동 사 유	㉒ 구 분
1		198		시도 구시군	1. 2.	
2		198		시도 구시군	1. 2.	
3		198		시도 구시군	1. 2.	
4		198		시도 구시군	1. 2.	
5		198		시도 구시군	1. 2.	
6		198		시도 구시군	1. 2.	
7		198		시도 구시군	1. 2.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동 합 된 가 구 수

가 구

※ 1. ㉒ 구분란에는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등을 기입
 2. ⑭ 란에는 조사구내 통합된 가구수도 합계됨

3 가구원 증가(23 명)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상년			학력	배우자 유무	초혼		이상자녀수		임신여부		총출생자녀수	선거구지		전입일자	이동사유		구분
					년	월	일			년	월	남	여	년	월		시도	구시군		1.	2.	
1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2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3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4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5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6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7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8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9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10				1남 2여	19년	월	일		1. 미유사 2. 유사 3. 사의 4. 유무	19년	월			19년	월		시도	구시군	19	1.	2.	

* 23 구분란은 출생, 전입, 누락 등으로 기입

4 가구원 감소 (40 명)

구분	④1	④2	④3	④4	④5	④6	④7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이름	변동일자	목적지	이동사유	구분
1				198	시도 구시군	1. 2.	
2				198	시도 구시군	1. 2.	
3				198	시도 구시군	1. 2.	
4				198	시도 구시군	1. 2.	
5				198	시도 구시군	1. 2.	
6				198	시도 구시군	1. 2.	
7				198	시도 구시군	1. 2.	
8				198	시도 구시군	1. 2.	
9				198	시도 구시군	1. 2.	
10				198	시도 구시군	1. 2.	

5 가구표 수정 요구 사항

구분	④8	④9	④0	⑤1 수정할 내용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가구표란번호	수정전내용	수정후내용
1					
2					
3					
4					
5					
6					
7					
8					
9					
10					

* ④7 구분란은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 등을 기입

6 조사구내 이동(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

구분	이동 전 가구번호	이동 전 가구원번호	이동 후 가구번호	이동 후 가구원번호	이동 후 변경된 내용				초혼년월	
					가주와의 관계	저처의 종류	주택소유관계	배우관계	년	월
1										
2										
3										
4										

※ 1. 62구분란은 "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을 기입한다. 2. 해당사항이 없으면 사선(\)을 한다.
3. 분가한 가구는 가구표를 작성 첨부할 것.

7 임신 기록 및 결과

구분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부 인 이 름	출 산 예 정 년 월	결 과	비 고
1				19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2				19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3				19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4				19년 월	1. 임신 2. 중절 3. 사산 4. 기타	

8 특기사항 및 신축, 누락거처의 위치

Blank area for recording special items and locations of new construction or omissions.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이외의 사용을 금함.

조사대상가구현황가구표

가 구 표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매 중 매									
		조사구 번호	구역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거처 구분	소유 관계	구역 구분	가구 구분					
198	작성	⑤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비조사구 건물 내외 구분 5. 주택연합회 거처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사월세 5. 월세 6. 기타	1. 도시가계 +경·인 2. 경·인	1. 봉급자 2. 노무자 3. 근로자외 4. 부적격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번호	이 름	가구주 관계	성 별	생 년 월 일			학 력	배 우 관계	주 혼		이혼 사년수	임 신 여부		총 출 생 수	전 입			비 고	가계조사 부적격 사유
				년	월	일			년	월		남	여		년	월	년		
01				1	년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9	년	월	년	월	일			
02				1	년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9	년	월	년	월	일			
03				1	년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9	년	월	년	월	일		㉔	
04				1	년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9	년	월	년	월	일			
05				1	년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9	년	월	년	월	일			
06				1	년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9	년	월	년	월	일			
07				1	년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9	년	월	년	월	일			

도 소액업 통계조사 대상처 변동보고서

(198 년 월분)

작성일 : 198

통계사무소장

대상처번호	대 상 처 명	변 동 월 일	변 동 내 용				
			대 상 처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유 통 단 계	전 화
<p><u>적 요</u></p>							

사업체 변동조사표

198

년도 월분

통계사무소

① 사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구 동 (※) 시 읍 번지 군 면	④ 전화번호	⑤ 경영조직 1. 회사 2. 기타법인 3. 개인	⑥ 사업체구분 1. 본사 2. 본사, 공장 3. 공장 4. 단독사업체	⑦ 종업원수	⑧ 변동년월 및 사유			
							변동년월	변동사유		
⑨ 생산품명 및 생산량							⑩ 비 고			
품목분류번호		생산품명	생산량(월간)							
정태	동태		단위	수량						

- 주: 1. 타시·도로 전출된 사업체는 종전의 주소와 사업체 고유번호를 비교란에 기재한다.
 2. 생산품명은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을 먼저 기재하되 광공업 동태조사대상 품목(추가품목포함)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한다.
 3. 변동사유 "11. 기타"는 존치대상 사업체이고, "12. 기타"는 삭제대상 사업체임.
 4. 생산량의 조사는 동태조사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중 종업원 10인이상 사업체만 조사(단, 두부,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부력, 탁주의 4개 품목은 5인이상, (시험가동중인 경우에는 정상가동시의 월간생산량을 추정기입))
 5. 휴업, 폐업이면 비교란에 현재의 사업체 고유번호 기재.
 6. (※)란은 행정동명을 기입할 것.

도소매업 동태조사 유고사업체 보고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사업체명	주소	업종	유고사항	발생년월	대체예정월	비고

* 매월 18일한 제출

사무소(출장소)장

유 고 사 업 체 대 체 보 고 서

조사관리과장 귀하

(198 년 월분)

조사구번호

유고일자 198 년 월 일

사업체번호

유고내용

	유 고 사 업 체	신 규 사 업 체	비 고
사 업 체 명	(전 화)	(전 화)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업 종			
매장면적및종업원수	평 명	평 명	
주요취급상품			
월간판매액			

(중앙제출용)

위와 같이 유고 및 신규사업체를 보고합니다.

198 년 월 일

통 계 사 무 소 장 ㉠

유통가격조사유고대상처보고

작성일: 198

대상처번호	대상처명	주소	전화	유통단계	유고사항	발생년월	비고

유통가격조사
대상처변동보고서
 (198 년 월분)

작성일 : 198

통계사무소장

대상처번호	대 상 처 명	변 동 일	변 동 내 용				
			대 상 처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유통 단 계	전 화

적 요

광 공 업 사 업 체 변 동 통 보 고 서

경영조직

사업체 구분

변동사유

통계사무소 198 년 월분

- | | | |
|---------|--------------|---------------|
| 1. 회 사 | 1. 본사(공장분리) | 1. 전입 2. 전출 |
| 2. 기타법인 | 2. 본사·공장(통합) | 3. 휴업 5. 신규 |
| 3. 개 인 | 3. 공장(본사분리) | 7. 전입 8. 폐업 |
| 4. 기 타 | 4. 단독사업체 | 11. 기타 12. 삭제 |

(1) 사업체 고유번호	(2) 사업체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경영 조직	(7) 사업 체 구분	(8) 종업원 수	(9) 변동년월 및 사유		(10) 생산품명 및 생산량				(11) 비 고
			시 도	구 동(행정동) 시 읍 번지 군 면 리					변 동 년 월	사 유	품 목 분 류 번 호		생 산 량 (월간)		
											정 태	동 태	단 위	수 량	

주: 1. 시부의 경우 법정동명 다음에 행정동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2. (6), (7)항은 부호로 기재하고 (9)항의 변동사유는 부호와 사유를 병기한다.
 3. (10)생산품명은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을 먼저 기재하되 광공업 동태조사 대상품목은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4. 품목분류번호는 광공업 통계조사의 분류번호와 광공업 동태의 신지수 품목번호를 함께 기재하며 동태품목인 경우 월간 생산량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종업원 10인이상, 단 두부, 탁주,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부력은 5인이상)
 5.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변동사유, 전입(전출)사업체의 종전 주소와 사업체 고유번호 등을 기록한다.
 6. 변동사유 11기타는 존치대상사업체이고 12삭제는 삭제대상 사업체임.